

2018학년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목 차

📍 2018학년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 | ii

📍 직무연수 운영 계획 | v

📍 연수 강의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정원규	3
2.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동기	7· 1
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이성희	5· 2
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요청 김원태	73
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례 박중훈	95
6.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선보라	1· 8
7.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초등) 장대진	9· 8
8.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중등) 신기숙	9· 9
9. 우리교육이 지향해야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초등) 이은진	11· 1
10. 우리교육이 지향해야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중등) 이수영	9· 11
11.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손희정	127
12.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초등) 송미숙	91
1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초등) 배성호	71
14.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중등) 정영철	11
15.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중등) 조성백	51

📍 [부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9



2018학년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

민주시민교육과

1 |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797호, 2018.1.4.)
- 새정부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2 | 추진 목적

- 학교 안팎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조성
- 학생 생활과 관련된 체험·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생과 동반자적 관계의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교원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토론문화 조성

3 | 기본 원칙

-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 육성의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여 교육적 실천 방안 모색
-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수-학습 권장
- 모든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추진
- 학생들의 시민성 교육을 위해 사회현안을 있는 그대로 다룰 수 있으나,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4 | 2018 역점 과제

- 민주시민교육 체계화를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실행 기반 조성
 - 주제별·지역별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 4차 운영
 - 학생 중심 학교민주주의 지표 시범 적용 : 지원청별 초3, 중2, 고1(예정)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
 - 초·중·고등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797호, 2018. 1. 4. 제정))
 - 각 학교별 2018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내재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및 체험중심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연구회 11개 구성 및 교원직무연수 4기 운영
 - 학교민주시민교육 핵심교원 발굴 및 국내외 심화 연수 운영

5 | 2018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

영역	주요 과제	시기
민주시민교육 실행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 주제별·권역별 포럼 4회 운영 ▶ 학생 중심 학교민주주의 지표 적용 시범 운영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및 자문관 제도 운영 ▶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월~11월 3월~12월 연중 3월~'18.2월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시민 실행력 공유를 위한 서울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민주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업무협약 기관과 함께 하는 법교육 내실화 ▶ 교육지원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특색활동 지원 	11월(본선) 3월~11월 5월~12월 3월~12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4기 운영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핵심교원 양성연수운영(20명 내외) ▶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연구회 지원 사업 운영(11개팀) ▶ 학교민주시민교육 학교관리자 워크숍(본청 및 지원청별) 	5월~12월 7월~9월 3월~12월 3월, 9월





6 | 기대 효과

- 체험과 참여 중심의 시민성 교육으로 ‘교복 입은 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공존의 학교문화 형성





2018 학교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운영 계획

- 학교시민교육 역량강화 교원직무연수

민주시민교육과

I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6797호, 2018.1.4.제정)
-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2018. 1.)
- 2018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민주시민교육과-350, 2018.1.15.)

II | 목적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내용, 실천 방법 등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역량 강화
- 서울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사회현안 논쟁수업 정책 방향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 사례공유 및 인식 제고
-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과 및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융합)교과 사례와 교수법 체득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역량 강화

III | 추진 방향

-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30시간 직무연수로 운영하며 이수자에게 해당 학점(2학점)을 부여한다.
- 연수대상은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관내 초·중등 교원으로 한다.
※ 2018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연구회 회원 참가 권장
- 출석연수와 합숙연수를 병행하고, 합숙연수는 현장 체험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교육활동 실행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





-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현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통합 또는 분반하여 실시한다.
- 연수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강사관리, 연수생 근태관리 등 연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 기타 사항은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직무연수 운영 지침에 따른다.

IV 세부 추진 계획

1. 연수 개요

- 가. 과정명 : 학교시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 나. 연수종별 및 시간 : 직무연수(전문성향상과정) 30시간(2학점)
- 다. 주최/주관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라. 연수기간

구분	연수기간	비고
직무연수	2018. 4.24.(화) ~ 4.30.(월) 16:00-20:00(4시간) (※ 4.27.(금)~28.(토) 1박 2일 합숙 14시간)	6일간 운영

※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급별 교육활동 수준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중 일부를 초·중등으로 구분하여 연수 실시

- 마. 장소 : 바비엡 2 및 서울유스호스텔
- 바. 대상 : 초·중등교원 80명 (예정)
- 사. 내용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변화 모색





2. 교과목 및 시간 배당

교과목	교수요목	시 수	수업방법			강사
			강의	참여	기타	
학교민주주의의 이해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이해	3	2	1		정원규 (서울대 교수)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 보이텔스바흐 합의 성립 배경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교육적 의미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4	2	2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의 동향 - 글로벌사회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	4	2	2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요청	-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변화 요구	3	2	1		김원태 (학교민주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례	- 학생인권 상담 사례를 통하여 학교 인권 침해 유형과 인권원칙을 이해	3	2	1		박종훈 (전(前) 학생인권센터 사무관)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한 학생인권보호 -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2	1	1		송미숙 (상현초 교장) 정영철 (대영중 교장)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 학급헌법 제정을 통한 규정 정하기 - 창체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2	1	1		장대진 (신용산초 교사) 신기숙 (독산고 교사)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 - 교육과정 재구성과 민주시민교육 - 학교급별 분임도의	2	1	1		이은진 (발산초 교사) 이수영 (북서울중 교사)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1, 2	- 사회참여, 융합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사례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6	1	1	4	배성호 (삼양초 교사) 조성백 (오산중 교사)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정책방향	-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1	1			홍승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민주시민 담당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 견기를 통한 자기 성찰	2			2	선보라 (장평중 교사)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 4·19혁명, 6월 민주항쟁, 전태일 열사 관련 체험코스 탐방	2			2	손희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3. 연수 세부 일정

날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6:00 - 16:50	17:00 - 17:50	18:00 - 18:50	19:00 - 19:50
4/24(화)	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교육청 담당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정원규 서울대 교수)		
	중				
4/25(수)	초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독일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중	독일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4/26(목)	초	초등학교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배성호 삼양초 교사) ※ 재택연수 후 지도안 작성 담당 강사에게 전자메일 제출			
	중	중등학교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조성백 오산중 교사) ※ 재택연수 후 지도안 작성 담당 강사에게 전자메일 제출			
4/27(금)		<1박2일 합숙연수 세부 일정 참조>			
4/28(토)					
4/30(월)	초	초등학교내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 (송미숙 상현초 교장)	초등학교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I (배성호 삼양초 교사)		
	중	중등학교내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 (정영철 대영중 교장)	중등학교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I (조성백 오산중 교사)		

※ 연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박 2일 합숙연수 세부 일정>

일정	시간	구분	교과목	교수요목	시수	강사
4.27. (금)	15:00~17:40	초중 통합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새로운 요청	-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변화 요구	3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40	초중 통합	학생인권 생각하기	- 학생인권 이해 및 학교시민 인권 감수성 강화 방안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3	박종훈 (前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4.28. (토)	06:00~07:40	초중 통합	민주시민 담당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 걷기를 통한 자기 성찰	2	선보라 (장평중 교사)
	08:00~09:00	아침 식사				
	09:00~10:40	초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이해하기	- 초등학교 수업의 실제	2	장대진 (신용산초 교사)
		중		- 중등학교 수업의 실제	2	신기숙 (독산고 교사)
	11:00~12:40	초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방향	- 토론을 통한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2	이은진 (발산초 교사)
		중		- 토론을 통한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2	이수영 (북서울중 교사)
	13:00~14:00	점심 식사				
	14:00~15:40	초중 통합	민주·역사 체험 올레길	- 4·19혁명, 6월 민주항쟁, 전태일 열사 관련 체험코스 탐방	2	손희정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전문강사)





4. 연수자 유의 사항

- 가. 연수기간 중 연수자는 연수교재, 연수안내서, 필기도구,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연수에 참석한다.
- 나. 연수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해당 연수실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한다.
- 다. 연수기간 중 공적인 사유로 결석, 지각, 조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공문으로 사유서를 제출한다.
- 라. 결석, 조퇴, 결과, 지각으로 결강 시수가 총 이수 시간의 20%(6시간)를 초과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5. 연수결과 처리

- 가. 교육연수 이수증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명의로 발행한다.
- 나. 연수 서류 일체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V 기대 효과

- 협력적 인성을 함께 가꾸는 민주적 교육공동체 조성·확산을 위한 교육역량 제고
- 민주시민교육의 현장(교과시간/학생자치/동아리/방과 후 생활 등) 활성화 기여
-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주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인력풀, 네트워크
-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각종 콘텐츠 총화 및 현장적용방안 구체화





연수강의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정원규
2.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 이동기
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 이성희
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요청 | 김원태
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례 | 박종훈
6.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 선보라
7.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초등) | 장대진
8.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중등) | 신기숙
9. 우리교육이 지향해야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초등) | 이은진
10. 우리교육이 지향해야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중등) | 이수영
11.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 손희정
12.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초등) | 송미숙
1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초등) | 배성호
14.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중등) | 정영철
15.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중등) | 조성백

본 연수교재의 강의원고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

정원규 (서울대학교 교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2018. 4.24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의자 소개

자연대 계산통계학과
⇒ 인문대 철학과
[윤리학, 사회철학]
⇒ 사범대 사회교육과
[시민교육, 교육철학]



정원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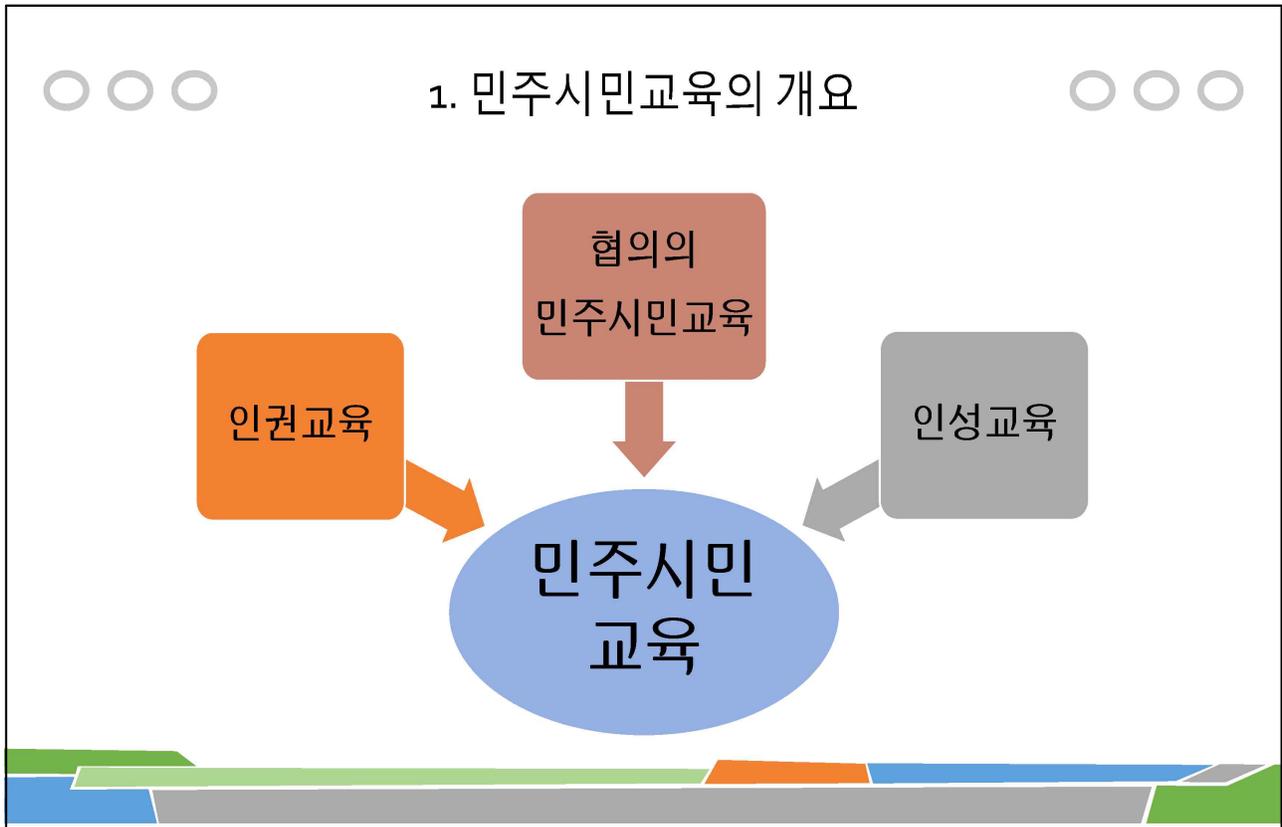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 민주주의

강의 순서

- 1. 민주시민교육의 개요**
 -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인성교육
- 2.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
 - 고대 그리스, 근대 유럽, 대한민국
- 3.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현대적 맥락**
 -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들, 민주시민교육의 기대 효과
- 4.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예시)**
 - 시민의 헌법적 지위, 시민적 가치
- 5. 민주시민교육 모범 사례**
 - 스웨덴 교과서, 회장선거, 이웃돕기
 - 시민적 가치(존중), 토론 교육(숙의/참여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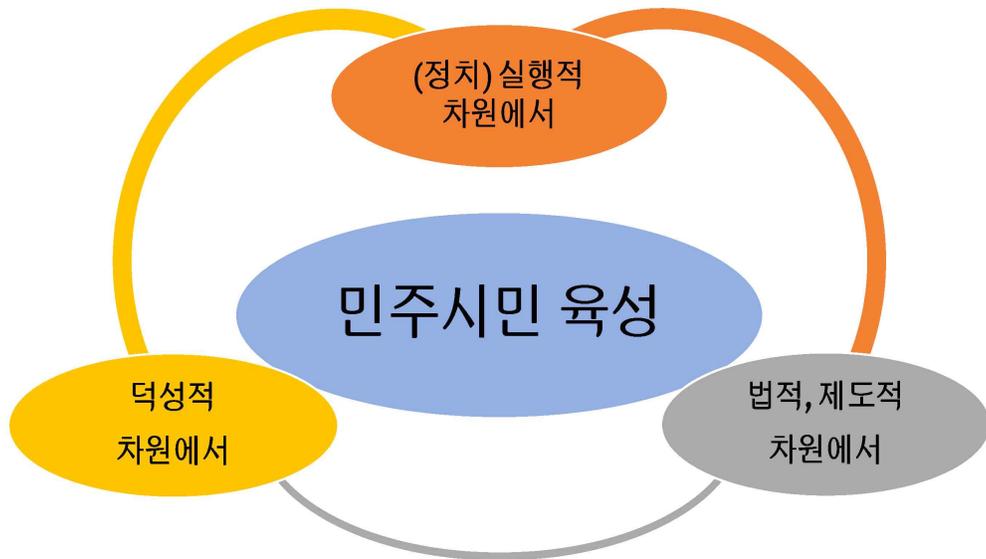


1-1. 인권, 민주시민, 인성 교육 상호 비교

인권교육	협의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권리 교육• 보편적 인권 교육• 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교육• 경제민주주의 교육• 생활 정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품성 교육• 예절 교육• 전통 문화 교육



1-2. 통합적 의미에서의 민주시민교육



1-3.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



내용적:
일상의 민주주의

-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은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제도적 수준에서 의식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 민주화 이후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문제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방법적:
통합교육

- 민주시민교육 및 유사 교육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교과, 범교과 교육 어느 것을 통해서도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2-1.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나쁜 정치체제

- 지배자의 이익 추구

참주정: 경호원, 용병 중시

과두정: 소수의 부자가 통치
- 핵심 제도: 차등 선거

민주정: 다수의 빈자가 통치
- 핵심 제도: 추첨 + 다수결

좋은 정치체제

- 모두의 이익 추구

군주정: 한 명의 현자

귀족정: 다수의 현자
- 실현 방법: 과거제도(?)

혼합정: 민주정 + 과두정
- 핵심 제도: 평등 선거

2-2.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 (근대 서유럽 민주주의)

영국 혁명

- 자유주의의 길

평화롭게 진행

경쟁적 재판소 설립으로 각 계급의 권익 신장

사법부 중심 영미법 체제 정착

프랑스 혁명

- 공화주의/민주주의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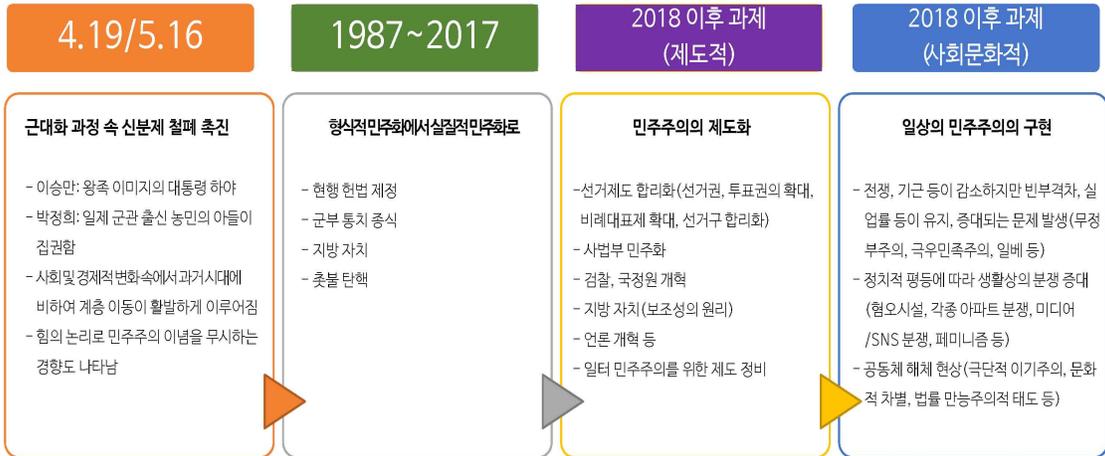
폭력적으로 진행

입법, 행정, 교육 체제 정비

입법부와 행정부 중심 대륙법 체제 정착



2-3.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 (대한민국)



3-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현대적 맥락 -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갈등들

학생인권	군가산점	입사부정	미디어	청소년 참정권
학교폭력	여혐/채팅방/성희롱/성폭력	내부거래/상속세	댓글문화	존엄사
교권침해	다문화	갑질	일베	원전중단



3-2.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는 새로운 양상

● 촛불 혁명 이전

- 사회 민주화 ⇔ 반독재
 - 시민들의 기본권 확보
 - 정경유착 근절
 - 위계적 사회 질서 철폐 목표
- ⇒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 실현 목표

● 촛불 혁명 이후

- 사회 민주화 ⇔ 차별 철폐, 존중
 - 반민주적 잔재 청산 외에
 - 소수자 존중
 - 사회적 약자 보호(갑질 근절)
 - 협력적 사회 질서 건설 필요
-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목표 확대

3-3.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_학교폭력

엄격한 처벌을 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까?

사후적으로 회복적 정의 교육을 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까?

-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에 비하면 큰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까?

-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잠재력.



3-4.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_젠더 문제



젠더 문제는 가장 첨예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

- 무차별적 상호 비난으로 인해 젠더 이야기를 의제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젠더 문제가 사회적 약자의 부담 떠 넘기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입대나 출산이 사회적 유력층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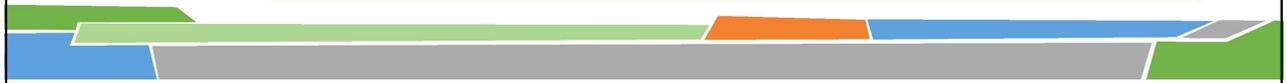


젠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 상대에 대한 존중 교육 먼저 필요
- 사회적 부담을 공정히 나누는 방법에 대한 교육, 즉 정의 교육 먼저



민주시민교육은 젠더 교육의 필수선행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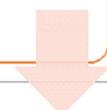


3-5.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_진로교육



현재 진로, 직업, 노동 교육의 문제점

- 근로정신함양교육이나 결과적으로 노동혐오교육이 되고 있음
- 직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서는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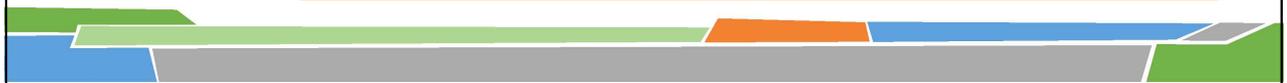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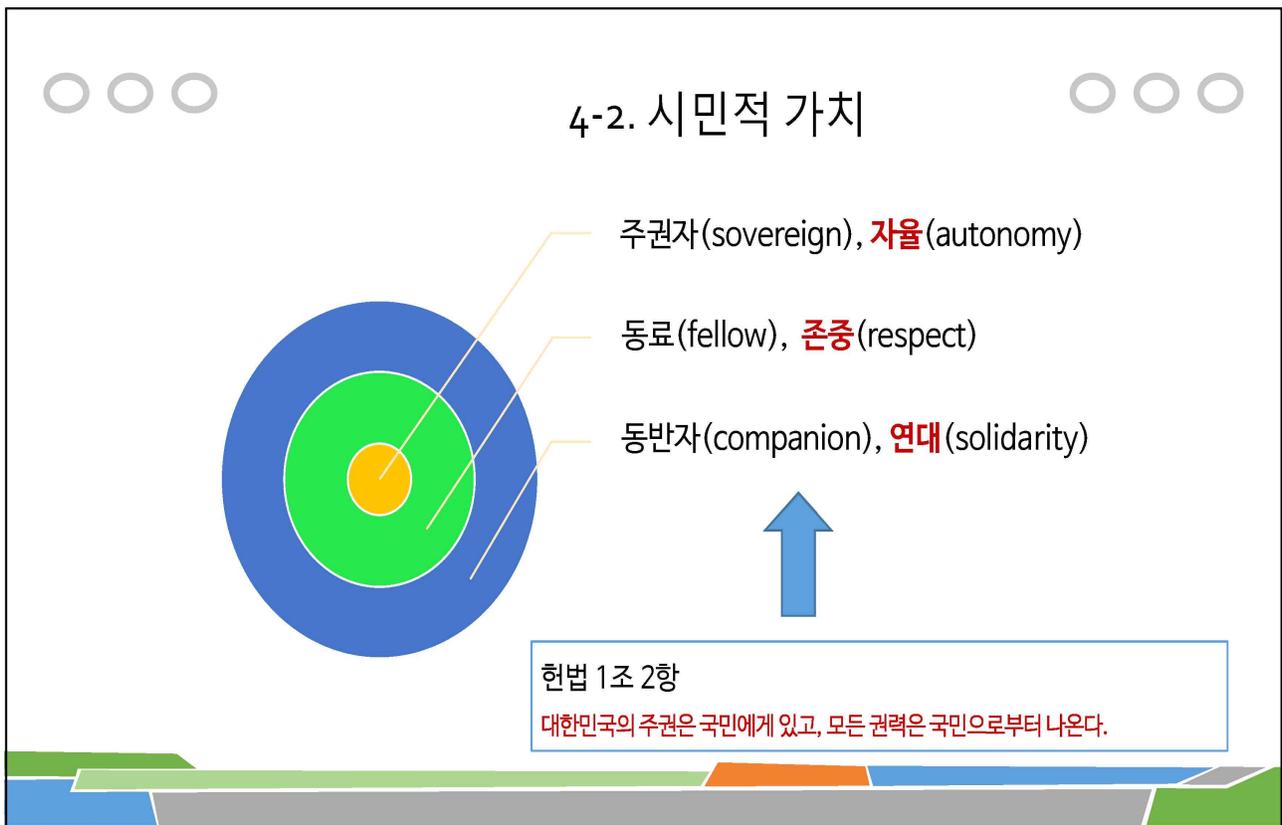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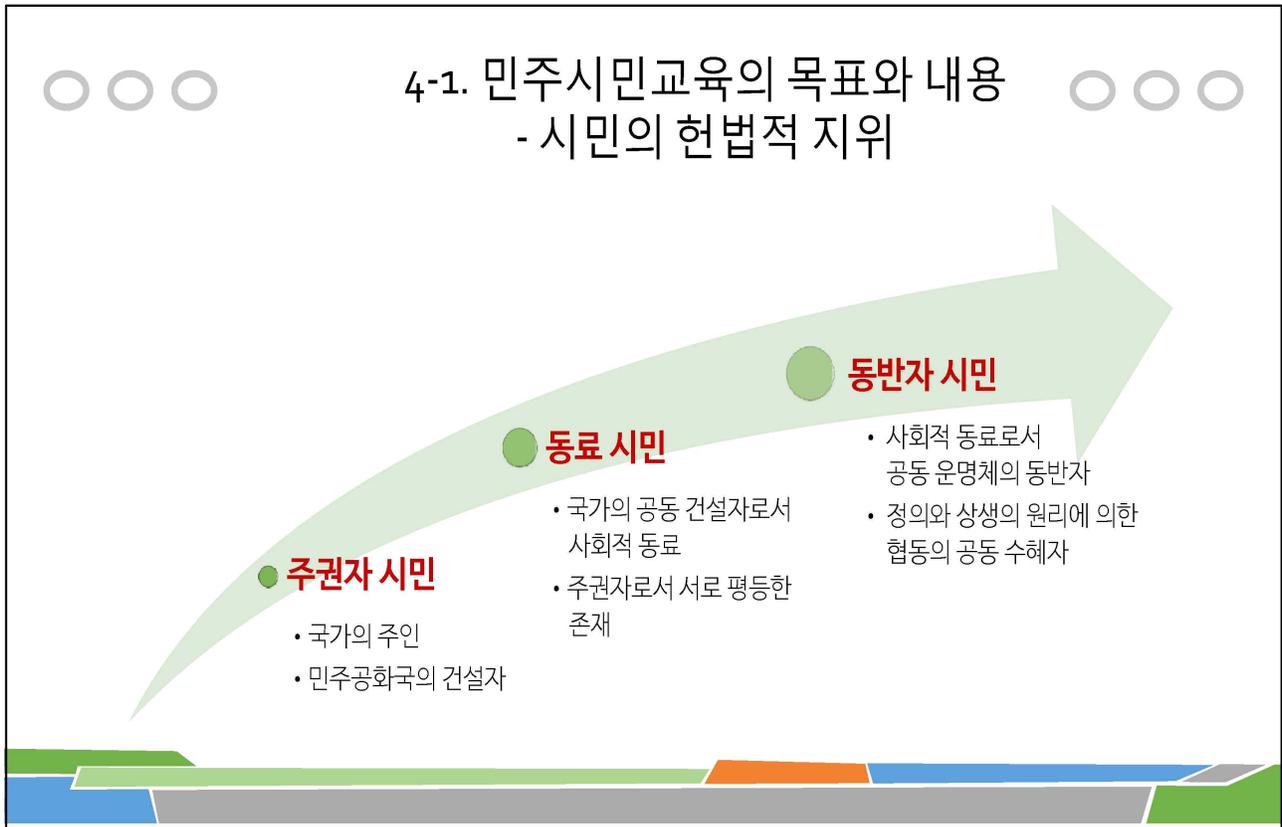
- 직업을 자아 실현과 사회적 의미 창출의 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함
- 노동 존중, 노동인권, 바람직한 기업 문화 등에 대한 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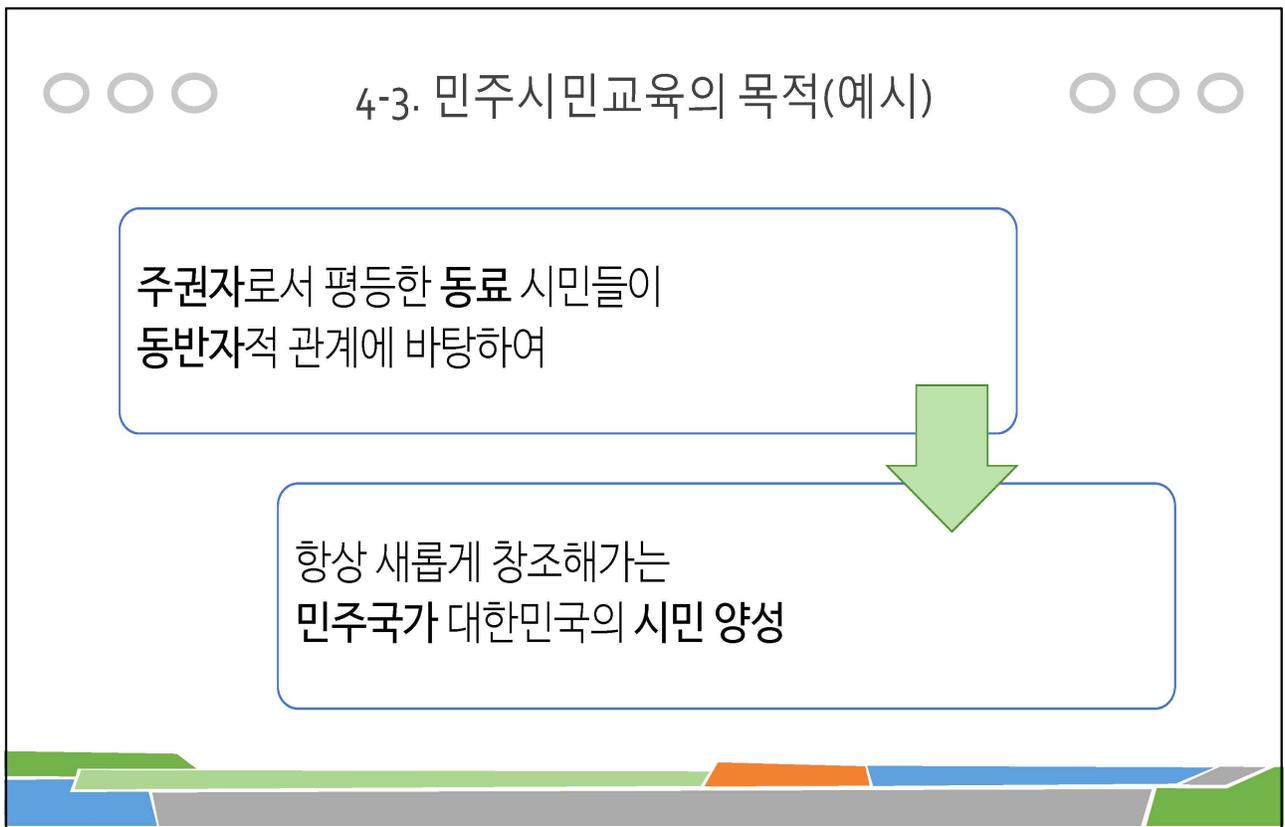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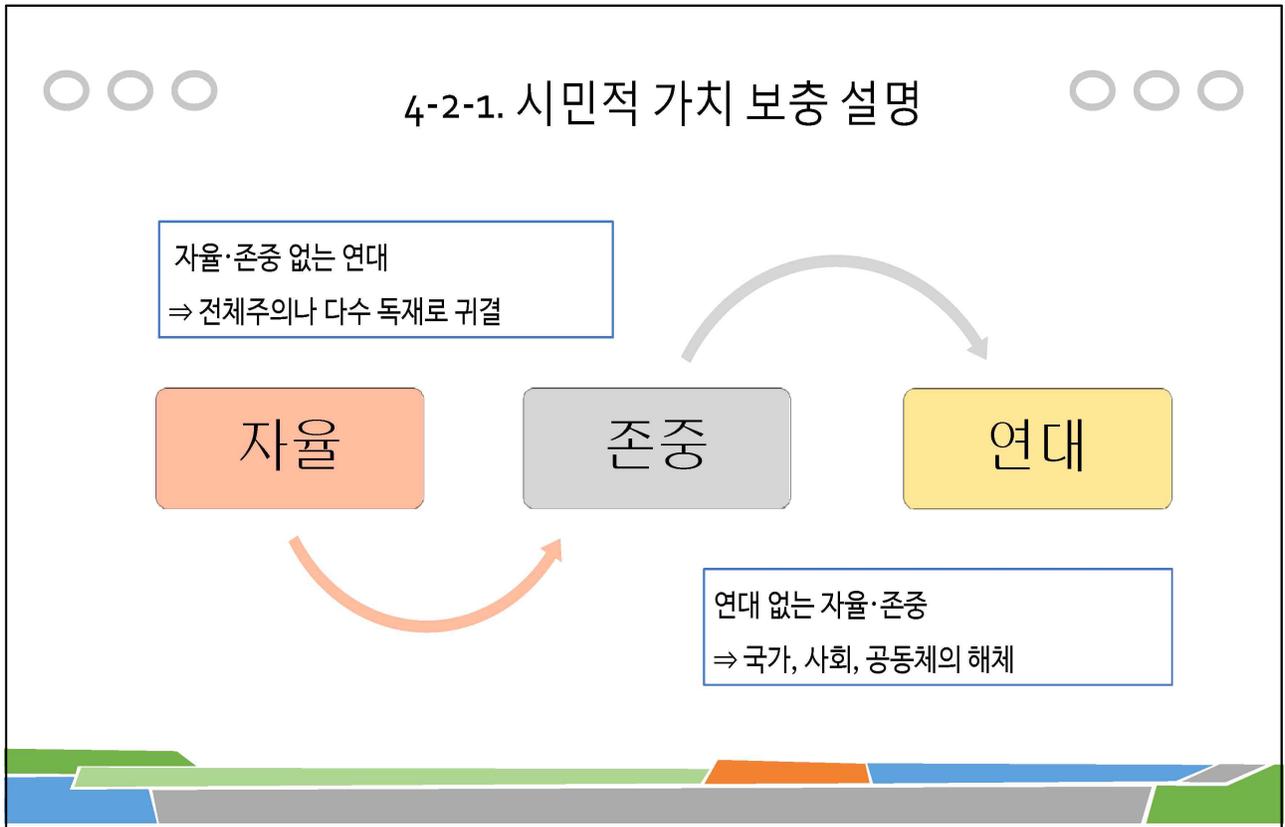


노동 환경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은 진로, 직업, 노동 교육의 필수 요건









5. 학교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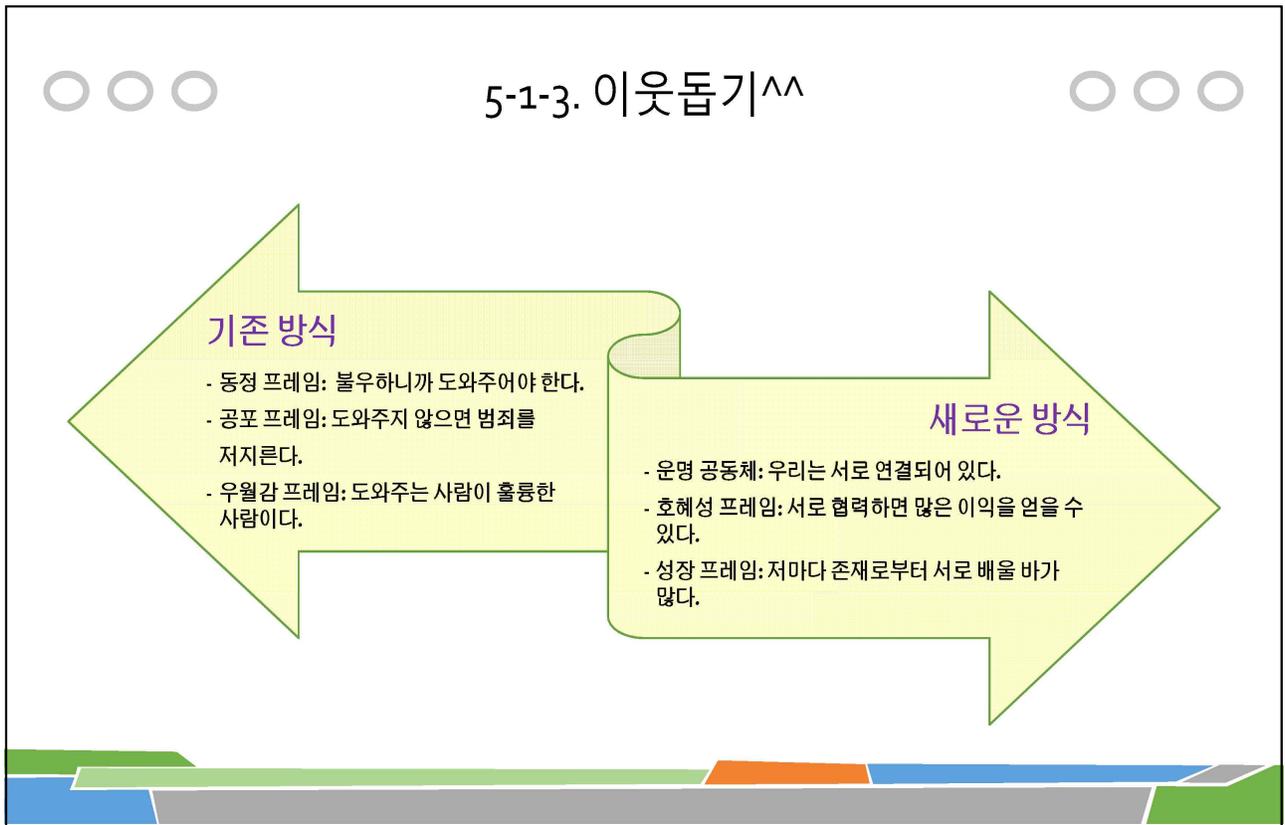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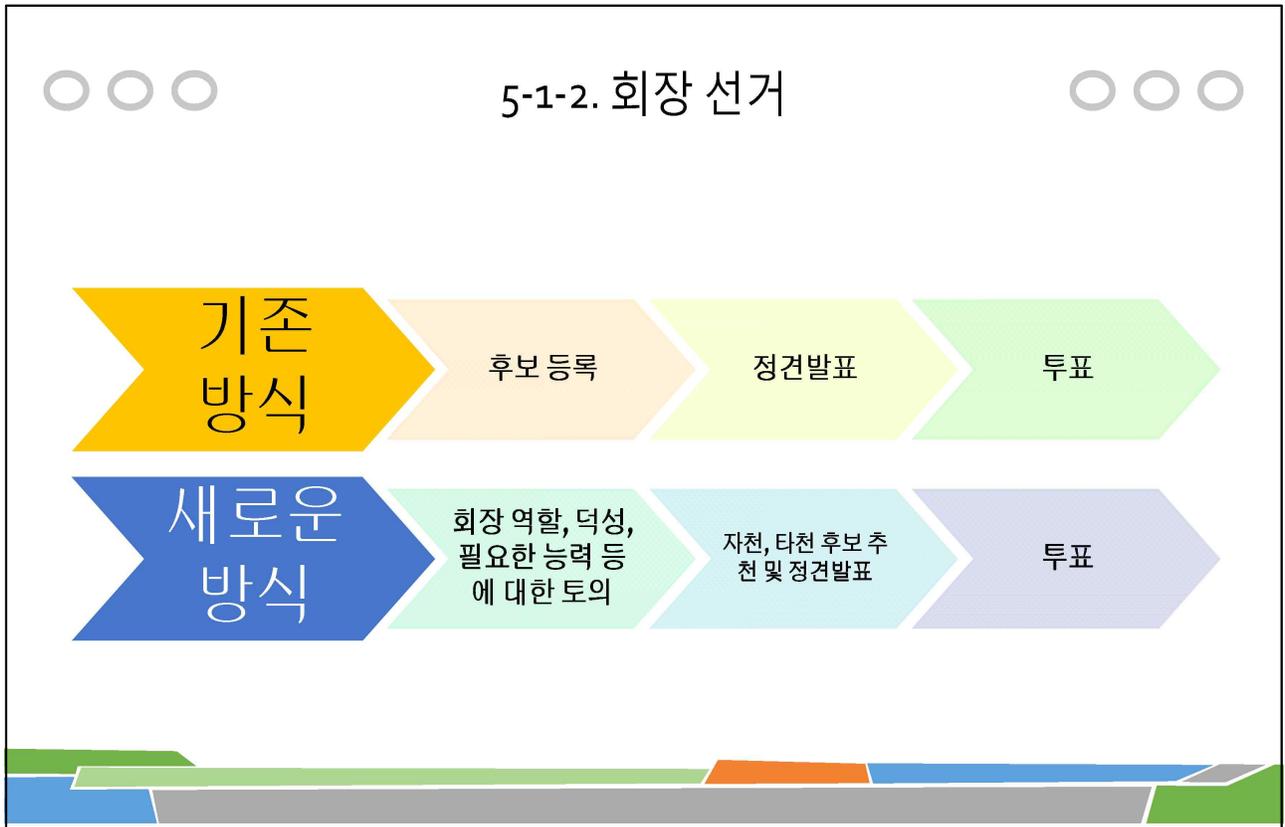
5-1-1. 민주시민교육 예시 - 스웨덴 사회교과서



*** 법률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18세 미만이므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이다.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든,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다.

1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친의 허락을 받아서, 당신은 가정 밖에서 가벼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 당신들과 같은 또는 좀더 나이 어린 아동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을 경우, 경찰은 당신들의 사건을 코윈의 사회사무소로 보낸다.
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사무소나 레스토랑,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낮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양친의 허가는 물론 필요하다.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당신은 형법상의 성인이다. 즉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오토바이의 면허를 딸 수 있다. ○ 신용거래가 아닌 한, 자신이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6개월 이상 되면, 보통승용차와 대형 오토바이의 운전연습을 시작 할 수 있다.(현재는 16세부터)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성인이다. 이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혼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고 국회·랜스탕·코윈의 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





5-2. 시민적 가치 교육 내용 예시(존중)



무엇을 존중할 것인가?

- 가치의 근원(각자는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
- 협의의 시민성, 인권, 문화적 정체성 등

사례 1: 자기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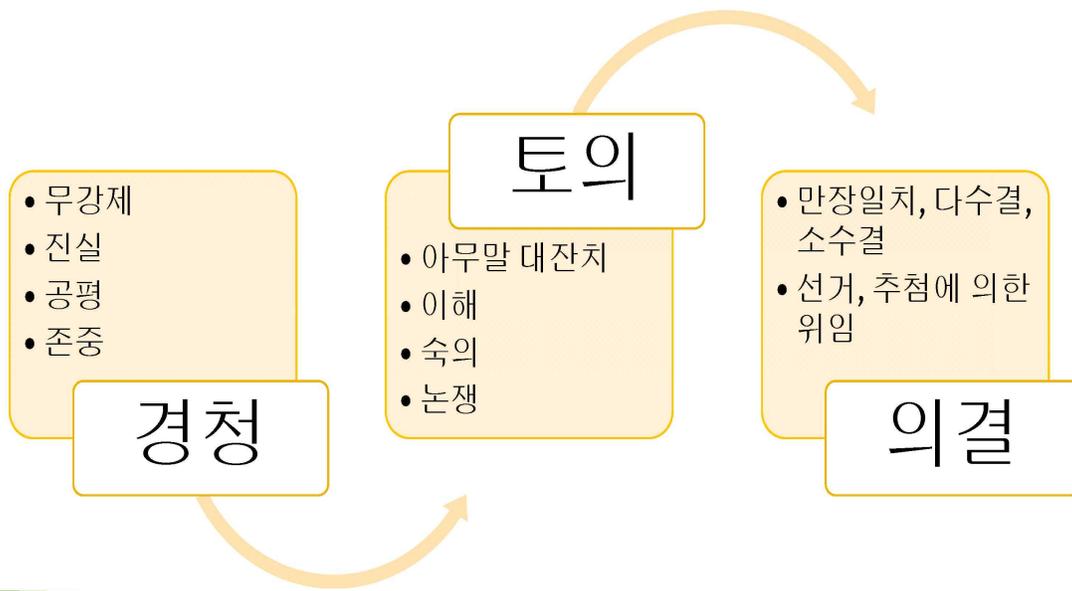
- 사회적 평가에 의한 비존중 종종 발생
- 자기 평가에 의한 자발적 비존중 종종 발생
- * 새디스트도 자기 존중을 해야 할까?

사례 2: 타인 존중

- 상황 자체는 자기 존중의 경우와 동일
- * 새디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
- 근원으로 들어가면 존중과 협의, 타협 등이 가능: 존재(존재의 질서, 진리, 신 등)가 모든 존재자의 근원 속성



5-3. 시민적 역량 교육 내용 예시(토론 1)





5-3. 토론과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 토의, 의결 절차의 통합: 전문가와 대중의 역할 미구분
- 전문가의 역할에 기대
- For the people 목적

토론 주제는 흔히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맥락에 따라서는
답이 있는 주제도
유용한 경우가 적지
않음.

참여민주주의

- 의결 절차 분리: 전문가와 대중의 역할 분리
- 자기결정권과 전문성의 조화 추구
- By the people 강조

○○○ **감사합니다.** ^^



02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1. 민주시민교육의 근간: 성숙과 갈등 극복

‘누구도 독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테오도르 에셴부르크) 민주시민교육은 이 두 명제에서 출발한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독재자인 사람은 불행하지만 그렇다고 그 스스로 독재자가 될 이유는 없다. 독재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만큼 민주주의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민주주의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곧장 그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의 과국적 역사 경험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 운동과 가치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민주주의자들’이 필요하다. 민주시민 ‘교육’의 독자적 의미와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성장하며 배운다고 모두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반대다. 이를테면, 인습적인 국가(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역사가 엘리트 특권층의 업적, 또는 민족의 광휘나 국가의 위용에 대한 서사라고 확신하며 협애하고 배타적인 역사상과 지배이데올로기로 물든 역사인식을 갖는 경우도 잦다. 또는 사회과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 제도 학습으로 환원해 학생이나 피학습자들로 하여금 정치 주체로서의 자기결정이나 사회 비판과 정치 참여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렇기에 정치 체제에 대한 학습이나 헌정 질서의 수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인성교육’을 내세워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참여 역량 증진의 과제를 뒷전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사회 세력 범주로서의 집단이 아니라 개별 시민을 전제하지만 그 개인들의 ‘착하게 살기’식 계몽운동은 아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이러하기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공동체가 꾸준히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때로 헌법을 개정하듯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하고 비판하며 고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전승하며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학습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민주주의 학습 과정은 구성원들 간의 비판과 논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판과 논쟁을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는 행위나 제도를 넘어 과정이자 문화가 된다. 주장과 반박, 논증과 설득, 경쟁과 쟁투, 대안과 타협, 조정과 합의, 유보와 미결 등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헌정 질서와 사회 체제의 결함과 문제에 대한 비판도 용인한다. 정치 체제와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지향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로 권장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기 결정과 선택 및 자유에 의거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지만 핵심은 특정 질서나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절차와 과정을 잘 인지해 정치 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운영을 보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분석하고 성찰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판단력의 고양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정치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을 지향한다. 이때 시민들을 특정 정치 진영으로 귀속하거나 정치 집회나 사회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의 궁극 목표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방관자를 정치 과정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것일 뿐이다. 적극적인 저항 시민의 형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성격을 오해하는 것이다. 정치 저항이나 사회 변혁의 집단 주체로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치 과정을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자율적으로 행위를 선택하고 참여(방식)를 결정하는 역량(Kompetenz)을 높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다. 그 둘은 더러 만나지만 자주 어긋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에도 교육학적 논의가 따로 필요하다. 학습자와 피학습자의 역할과 지위와 양자의 관계 및 그것을 둘러싼 정치문화의 전제와 토론 문화의 조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차이가 발생하면 교육 방법과 원칙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으로 교육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정되고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내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교육 방법을 둘러싼 ‘합의’ 문제는 민주시민교육 논의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한다.

한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전제다. 견해와 판단의 차이가 상호 배타적인 이익과 요구 및 그것의 결정과 영향으로 연결되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단정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내치지 말고 사회적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 수용하고 감당해야 그것을 해결할 조정 절차와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적대적으로 발현되거나 파괴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러 오히려 문제의 심층을 드러내고 영감을 자극해 생산적인 토론을 촉발한다. 민주주의 절차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상호 존중과 인정의 필요, 타협의 지혜 발휘 및 공생의 중요성을 높인다. 교육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도 마찬가지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교육학적 입장과 견해들이 경쟁하고 충돌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 공동체의 위기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극복할 상호간 이해와 타협 및 조정과 합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고 이성적으로 해결된다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견해와 입장이 발현되며 교육의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반대로 교육 원칙과 실천에 대한 민주적 조정 규칙을 찾지 못하고 이성적 합의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교육은 항상 격렬한 적대적 대결의 장이 되고 손쉽게 권력 사용과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다.

교육 갈등의 조정 규칙과 합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눈을 독일로 이끌었다. 서독은 1970년대 후반 점차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정치 대결을 극복하고 점차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1976년 11월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말한다. 1970년대 초 사민당(독일사회민주당: SPD)과 기민련(기독민주연합: CDU)의 정치 대결을 배경으로 서독의 진보와 보수 양 세력은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 학교 밖 시민교육의 내용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격렬히 전개했다. 얼마 뒤 그것에 질린 일부 교육학자들과 시민교육 종사자들이 갈등을 극복할 합의 모델을 발전시켰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줄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의미는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학교 ‘사회과’ 과목과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과국적 갈등이 지속되고 합의의 기반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관심을 가질만한 성과다.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의의

보이텔스바흐합의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파와 중도파의 정치교육학자들이 급진 비판과 사회해방 지향의 교육 이념을 저지하면서 좌파와의 충돌을 조정할 방법으로 등장했다. 물론, 애초 좌파에 속했던 정치교육 이론가들의 ‘교육학적 전환’과 ‘실용주의적 전환’도 중요하다. 하지만 쉴레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좌파의 급진 교육이론에 대한 응수였다. 정치교육의 핵심 원칙이 좌파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체제‘비판’이나 인간‘해방’이 아니라 ‘학생(학습자) 중심’과 자립적 판단 역량 향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놓여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단순히 기성 질서 무비판적 수용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갈등과 논쟁을 민주주의 정치교육의 당연한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 비판과 정치적 주체화를 독려한다. 좌파들이 지향했던 급진 비판과 체제 변화가 가능하려면 일차적으로 비판의 자유로운 발현과 정치 논쟁의 공적 인정과 관심 증대가 필수적이다. 또 강압에 가장 매달리는 정치주체가 국가권력이나 지배엘리트인 것을 고려하면 강압 금지 자체가 이미 체제 비판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게다가 첫 번째 원칙인 강압 금지가 학습자를 보호하는 방어막이라면 세 번째 원칙인 학생중심(학습자 이익 중심) 원칙은 학습자의 능동적 주체화를 추구한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심과 이익에 의거해 주체적인 방식으로 정치 상황에 개입할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어떤 정치사상이나 기성 정당 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



적인 비판적 참여와 정치 행동을 가능케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현실 비판과 해방 지향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주체화를 지향하고 심지어 ‘급진화’의 여지를 안고 있다.

물론,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들은 정치교육 ‘이론’의 완성이나 정점도 아니고 정치교육 ‘실천’의 표준이나 왕도도 아니다. 과잉 해석이나 과도한 의미 부여를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단순 모방과 직접 전이에서 생겨나는 탈맥락화를 경계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원칙은 정치교육 이론과 실천 사이의 ‘접점’에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최소합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 방법을 함축할 뿐이다. 그렇기에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육이론으로 보면 한참 부족하거나 너무 당연하고 실천 방법으로 보면 다소 막연하거나 상당히 무력하다. 그것은 정치교육 이론의 전제이자 실천의 근거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들로 민주시민교육의 ‘이론’나 ‘실천’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명료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들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이론의 옛 쟁점들은 더 명료해졌고 새로운 논쟁과 토론거리들이 풍성해졌다. 그것을 통해 건설적인 교육 이론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또는 그것과 유사한 원칙들을 미리 정해 놓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적용’할 방법만 찾는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향 및 교육 방법과 실제에 대해서는 각각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합의 원칙과 관련된 이론 쟁점과 실천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숙고하고 논쟁해야 한다.

이러테면, 다원주의와 논쟁성이라는 원칙에 따른다고 모든 종류의 주장과 견해를 다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 사회에서도 비민주적인 주장이나 강령을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권유린에 의한 인간의 고통과 희생을 무시하거나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과정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정치 세력과 사회 집단은 상존한다. 독일과 유럽에서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변호하는 세력은 존재한다. 그들이 ‘논쟁성’ 원칙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도 정치교육과 역사교육에서 ‘재현’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30년 동안 독일 정치교육을 이끈 쉴레도 그 문제에 직면했다. 1992년 극우 정당인 공화당(Republikaner)는 주 선거에서 10.9%를 얻어 주 의회에 진입했다. 공화당의 당수는 정치교육을 중요하게 보았기에 주 정치교육원의 이사진에 참여해 2년 동안 자신들의 정치 입장도 정치교육에 반영되기를 촉구했다. 쉴레는 그 당이 비록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본법과 독일 정치문화를 파괴하는 정당으로 보고 여타 이사와 함께 그의 개입과 교란에 맞서 싸웠다. 쉴레는 극우 정당의 정치 견해를 교육 현장에서 ‘재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권이나 자유의 기본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는 견해나 헌법이나 정치체제의 근간에 직접 충돌하는 극단적 주장을 다원주의란 명목으로 ‘의견의 하나’로 ‘재현’할 수는 없었다. 이 예가 곧장 여타 국가의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전이 되기는 쉽지 않다. 헌법의 기본 가치나 정치문화의 규범에 대해서도 이견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논쟁재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 또한 토론하고 대결하며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행위 주체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다.

한편, 갈등 해결이란 단순히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결책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어서는 곤란하다. 갈등 해결은 서로 다른 견해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 능력을 키워 적대 관계를 소통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선린 관계로 바꾸는 것을 포괄한다. 그것은 공정한 논쟁문화와 건설적 합의 문화에 귀속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그런 논쟁문화와 합의문화의 형성 과정과 성과를 잘 보여주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편재성과 역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일상문화의 발전에도 큰 의의를 지닌다.

게다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사나 정치교육 담당자들에게 직업윤리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권력기관을 비롯해 외부 단체나 학부모들의 교육 개입에 맞설 방패를 제공했다. 교사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지해 다양한 외압에 맞설 수 있으며 교사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능을 인정받으며 전문성을 고양할 계기와 필요를 더 적극적으로 갖는다.

한편, 학생들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통해 무엇보다 의견 형성과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와 용기를 얻는다. 학생들은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자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학교 교실을 독립적인 정치적 사회화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 공공 시민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당파적 관심과 개입 욕구를 억제하도록 만들며 그것은 공공 교육 전반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컨대 교육 실천에 대한 ‘최소합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관련자들은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 ‘최소’합의의 ‘최대’ 의의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

1) 논쟁성 원칙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정치 주체들에는 너무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향력 있고 세력이 큰 정당과 사회 집단들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논쟁의 어떤 입장들이 수업에서 재현되어야 하고 어떤 입장들이 교수법에 따른 제한을 근거로 수업에서 생략될 수 있는지는 정치교육의 실천에서 개별 사안마다 각기 따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의해 규범적 경계가 그어진다. 인권을 무시하는 견해는 여타 견해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없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가사가 들어 있는 음악이나 삽화를 애호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도록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이 부분에서 교사들은 인간 존엄을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 규범을 지지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의식화가 아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교육학적 질문들은 의식화와는 구분된다. 즉, 그런 입장을 지닌 어린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들의 입장에 대해 제대로 대결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치와 문화 입장들, 예컨대, 자기 세계관이 우월하다고 맹신해 다른 신념이나 문화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순전히 그 신념이나 특징 때문에 탄압하거나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2) 논쟁성은 중립성이 아니다.

정치교수법에서 논쟁성 원칙이 중립성 원칙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 논쟁을 원하고 독려한다. 논쟁성 원칙을 중립성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 입장을 억제하고 멀리하도록 만들거나 갈등이나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토론을 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지향과 갈등지향이라는 교수법 원칙도 수업에서 논쟁과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정당들과 다양한 사회 집단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들은 정당한 지위를 갖는다. 정치교육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판단력을 갖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수업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 때 교사들 스스로도 결코 비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을 갖고 헌신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논쟁 중인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민주 시민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에게 갖추도록 해야 할 정치와 관련된 지식과 판단 능력과 행동 능력을 그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직접 정치나 사회 참여 활동을 한다면 그게 이상적이다. ‘중립’이란 이름으로 견해 상실과 자기 배제 및 불분명한 입장 표명이라는 악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다시 강압이나 의식화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정치와 학문의 논쟁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학생에 대한 강압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정치적 판단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만약 교사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되 그것을 토론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항상 올바른 것으로 보여주지만 한다면 그것 또한 의식화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교사를 롤 모델로 생각하거나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며 생기는 의존성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입장을 따르거나 적어도 그런 척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교사가 자기 입장을 밝힐 때에 비로소 학생들은 그것에 비판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교사가 자기 견해를 숨긴 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주제화할 때보다 오히려 의식화의 위험이 더 크다.



3) 민주시민교육은 정치행동을 포함하되 궁극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는 직접적인 정치행동에 한정되지도 않고 그것을 궁극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시민의 역할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것이다. 정치 참여를 성공적인 수업 척도로 간주하는 것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첫 번째 원칙인 강압금지와 조용하기 어렵다. 성숙한 시민의 자유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학습자들을 강압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결국, 지속적인 정치 참여나 정치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능력 보유가 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물론, 학생들은 수업에서 단지 정치적 사건과 문제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수업을 통해 생겨나는 정치 참여는 우선 해당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포괄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일어나야 한다. 문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참가자, 즉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어 정치행동은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한다, 또 그것은 공식적인 수업 시간 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민주적인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 참여가 학생들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담론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상호 교호의 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정당할 뿐 아니라 정치교육이 계몽과 비판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시민상을 이상으로 삼던 현실에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잦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학생들이 보기에 수업에서 다루는 현실 정치의 문제들이 자기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자신의 판단도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들도 또한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자주 생긴다. 물론, 그렇더라도 수업 외에서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나 정치 참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결정 등은 정당하다. 학생들의 그런 결정을 비난하며 학생들을 강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기에 정치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경우다. 그 학생들에게는 비록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더라도 그것만이 시민에게 자유와 평등과 정의 같은 기본 가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수업은 항상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다루며 인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편,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해 극우(또는 극좌) 단체나 사상과 주장에 가입하거나 동조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민주시민교육 수업은 이성적 설명 시도의 한계가 금방 뚜렷하다. 이런 경우는 분명 사회과 과목에 한정된 민주시민 교육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간단치 않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상적인 공생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수업 과목과 학교 전체가 나서야 한다. 이 때 교사들은 민주주의 수업 문화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학생 대표 기구를 통해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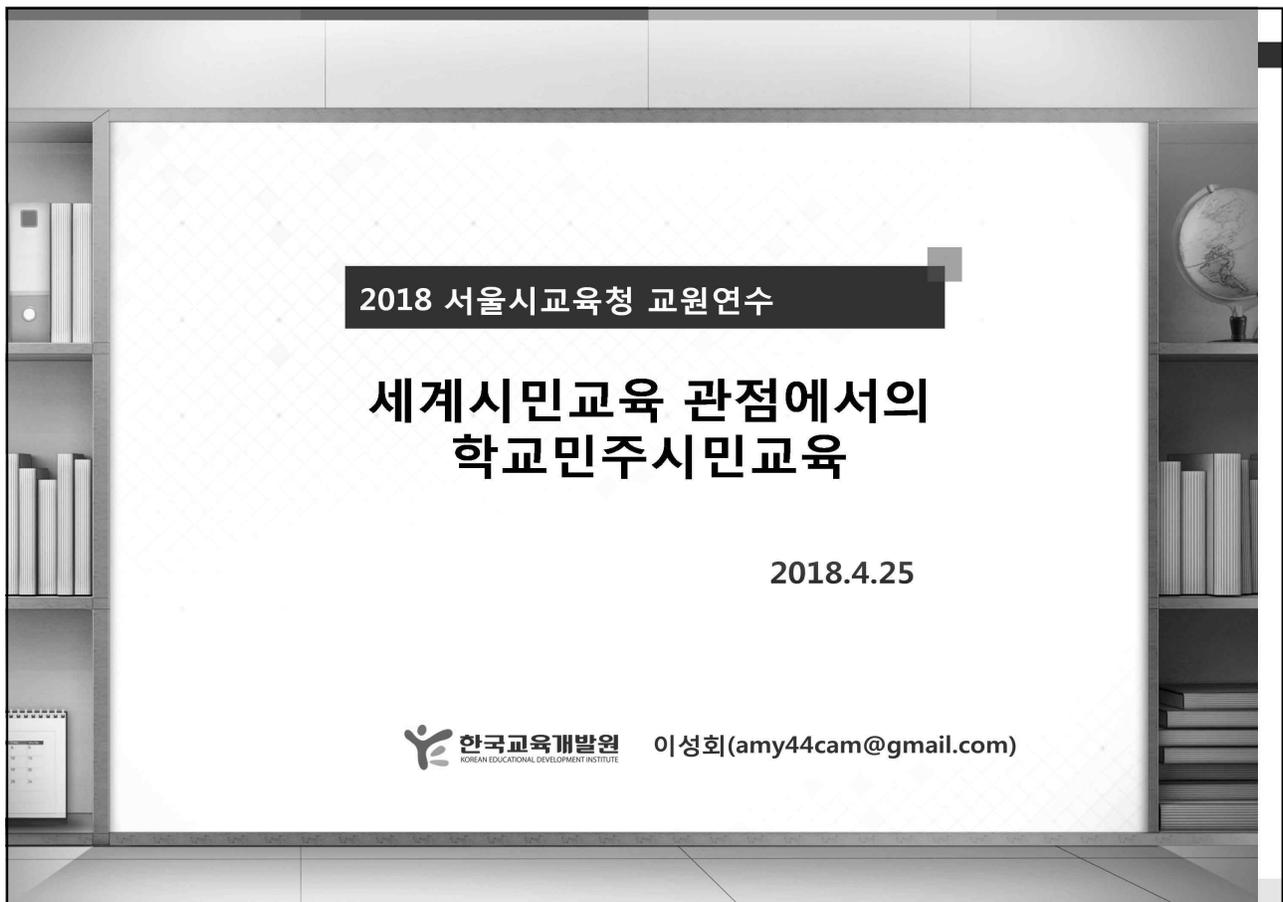
민주주의 학교문화도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들 외에도 전문 자격을 갖춘 사회교육가나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 사회교육가와 심리상담사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한다. 그들은 교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학생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와 달리 학교 교실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성적을 부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분쟁 조정과 갈등 해결을 연습시키는 교내 프로젝트도 민주주의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외 교육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극우 성향 학생들의 문제를 다룰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교외 교육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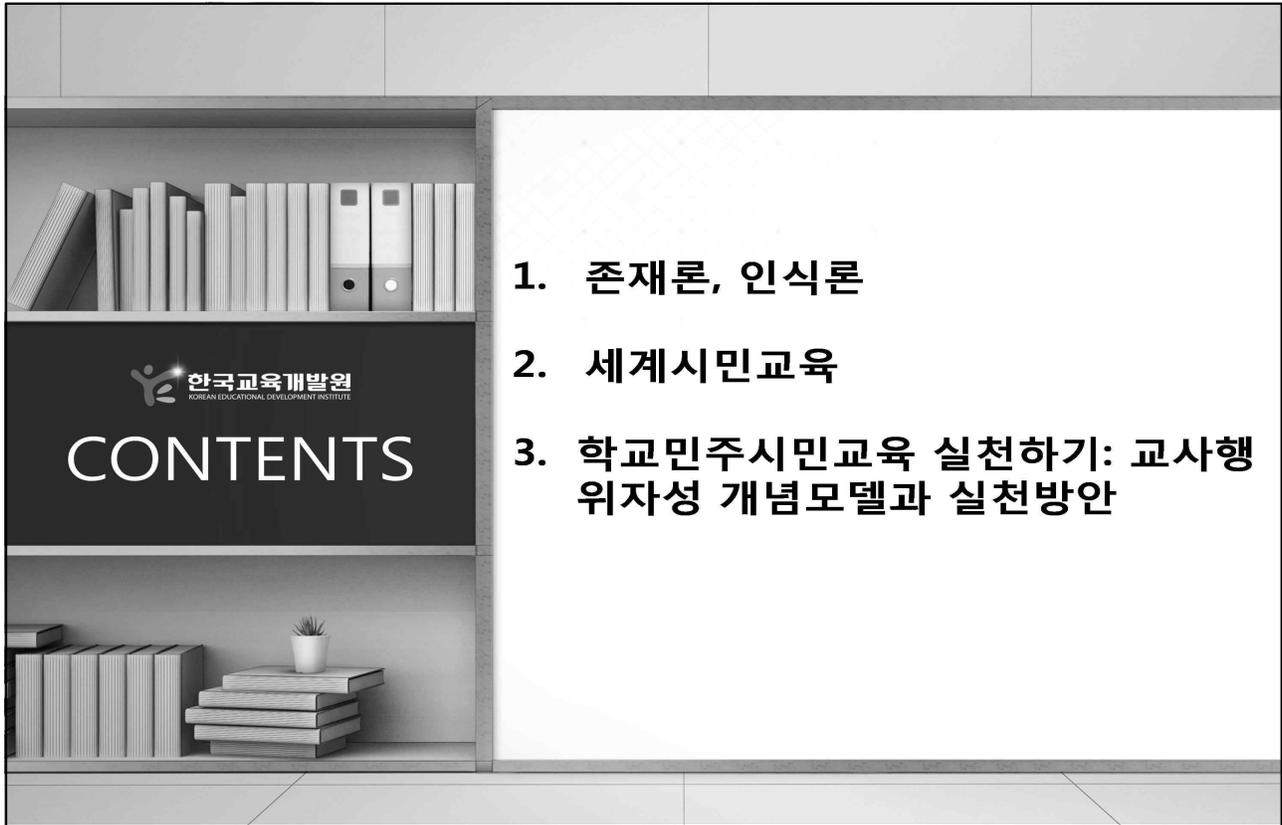


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이 성 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 존재론, 인식론

- 1) 실증주의
- 2) 해석주의
- 3)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 층화된 존재론, 상대적 인식론

—————
경험적(the empirical)

—————
실제적(the actual)

—————
실재적(the real)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세계시민교육 02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



2. 세계시민교육 정의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의존적인 세상에서 학습자들의 삶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틀 (영국 옥스팜, 2015)

글로벌 상호의존성, 불확실성, 불평등이 증대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재보다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교육패러다임(이성희 외, 2015: 25)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2. 세계시민교육 4가지 기저의 원칙

- 1) 글로벌 조망 + 글로벌 '책임감' 심어주기
- 2) 세계의 권력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심어주기
- 3) 사회정의와 공평에 대한 믿음 심어주기
- 4) 성찰, 대화, 변화(transformation)에 대한 헌신

(Bourn, 2015: 102)

2. 세계시민교육의 시작: 모여서 '대화'하기

대화의 원칙

- 1)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의(interactive)
- 2) 반응적(responsive)
- 3) 민주적(democratic)
- 4) 공평한, 치우치지 않는(fair & impartial)

(Bourn, 2015)



2.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딜레마

- 한국 교사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입시위주의 경쟁구도로 대변되는 전통적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

- 2018년 한국사회와 한국교사의 현실:

변곡점?

패러다임 전쟁중? (the real)

2.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딜레마

- 패러다임 전쟁 중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이라고 인식되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전통적 교육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는 학교현장이란 모순적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1) 시간찾기의 딜레마
- 2) 색다른 교육의 시도와 관성적 교사문화 사이에서의 딜레마
- 3) 평가의 딜레마



학교민주주의 실천하기: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과 실천방안

03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



3.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이성희, 2017, 2018)

교사란 누구인가? 잘 가르치는 능력 + α (교사행위자성)

- 1) 실천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
- 2) 실천 =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 행위자성(agency)
(교사의 전문적 조건) (교사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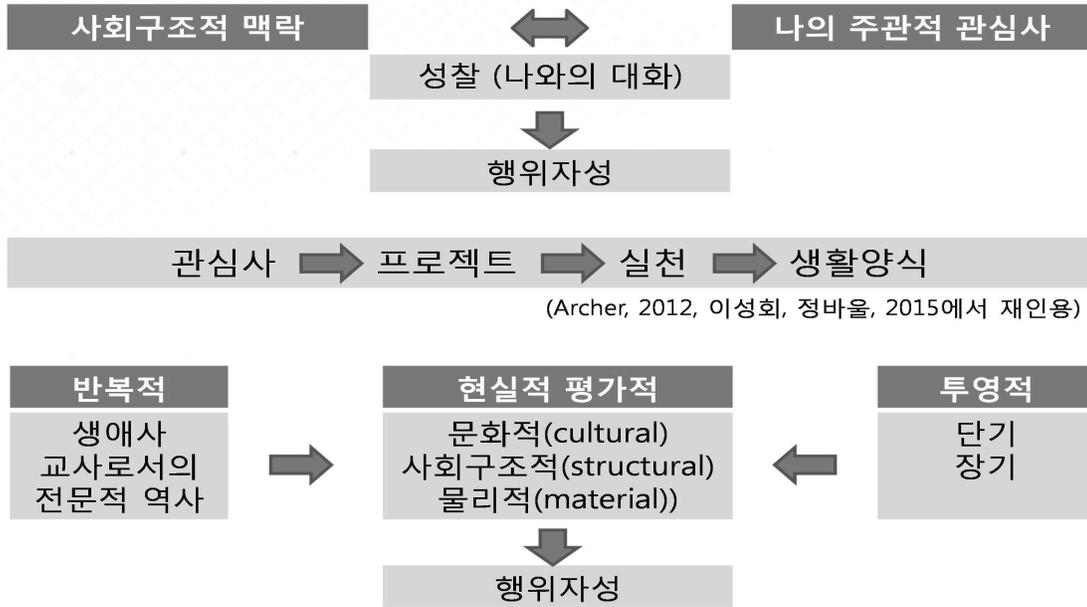
3) 행위자성의 정의

사회구조적 제약을	변화 혹은 재생산하는	실천적 힘
계속해서 진화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 학교		사회구조와 독립적인 힘 실천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3.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3.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

1) 반복적 영역(과거)

- 내 생애사, 과거의 경험이 지금 교사로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교사로서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이 교사로서의 현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 투영적 영역(미래): 장기적 교육목표에 대한 상상!

- 나의 한 시간 수업목표, 일주일, 한 학기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 아이들이 나와 만나고 일 년 후 어떤 모습으로 교실 밖을 나가길 원하는가?
- 아이들이 나를 만나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그림과 교육목표가 있는가? (장기적 교육목표)
-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3.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

3) 현실적-평가적 영역(현재)

- 문화적(발상, 가치, 믿음, 담화, 언어)
- 구조적(관계, 역할, 권력, 신뢰)
- 물리적(자원, 물리적 환경)

사회구조적 제약은 타파해야 할 관례, 약속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음

3. 학교민주주의 실천방안: 교사행위자성 발휘하기

1) 개인 성찰의 중요성(Bennett, 2018): 문화적 영역의 예

“학교(교실) 문화의 의식적인 건축가가 되십시오”

- 나의 말과 행동이 곧 학교(교실) 문화. 리더십의 중요성
(눈으로 보이는 문화가 말로 하는 문화보다 더 강력함)
- 문화는 의식적으로 창조될 수. 의식적인 말과 행동의 중요성
- 내가 원하는 학교/교실 문화는 무엇인가? 개념화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 문화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가 '일상'임.
- 나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은 어떤 학교(교실)문화를 재생산하고, 변화시키는가?
나의 일상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교사로서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 행위자성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님: 일상 → 습관 → 인격
- 나의 교육철학은?



3. 학교민주주의 실천방안: 교사행위자성 발휘하기

2) 주기적 관계, 집단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

- 3명, 3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
- 작은 실천부터 조금씩 → 학생의 변화 → 좀 더 큰 실천(체계화)
- 관계 맺을 때의 유용성:

1.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됨: 공유된 목표의 진화와 합의

(희성고 사례: 수업 좀 제대로 하자 → 소외된 아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준다 →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힘이 생기는 것) (이성희, 2018)

2. 현업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됨

3.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만, 주기적으로 체크받지 않는 전문성은 퇴화될 수 있음을 인정함. 배움은 낮은 곳에서 시작됨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참고문헌

1. 영국 옥스팜(2015). 세계시민교육: 학교를 위한 가이드.
2. 이성희 외(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이성희, 정바울(2015). 아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찰'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89-210.
4. 이성희 (2016).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현실적 딜레마. 다문화교육연구, 9(2), 31-55.
5. 이성희(2017).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이 교사학습공동체 논의에 주는 도전과 함의. Andragogy Today, 20(2), 1-27.
6. 이성희(2018).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장 리더십의 발현과정: 교사 행위자성 개념모델의 적용. 한국교원교육연구, 35(1), 233-260.

학교교육연구실 이성희

감사합니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0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요청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1. 현재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나?

-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 도입에는 성공했지만 삶의 민주화에는 실패하여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조희연)’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보호하기 위해 잡아야 하는’ 시민임(엄기호)
-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 하지만 사회 곳곳에 일상적으로 파시즘이 자리 잡고 있음
- 독일 비교정치학자 볼프강 메르켈에 의하면 “결손 민주주의”로 명명할 수 있음
- ‘시민의 부재’, ‘시민의 미성숙’은 유교적 근대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메리토크라시 이념 때문임(장은주)
-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비유 가능. 온전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 헌법 1조는 당위(sollen)를 선언하여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임.
이는 자크 데리다의 ‘도래할 민주주의(democracy-to-come)’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향해 정진해야 함을 뜻함.
-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사는 열린사회와 닫힌사회의 투쟁과정으로 파악
- 열린사회에서는 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적들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우리 열린사회에도 적들이 존재 : ‘나이주의’, ‘학생보호주의’에 의한 법령, 제도, 문화 등
- 열린사회 속의 닫힌사회에서 살고 있는 형국임
- 듀이 등 많은 교육사상가들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중요성 강조
-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 원리를 시험지를 통해서 만나게 됨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재민(主權在民)’에서 학생은 ‘민(民)’에 해당하는가? 학생들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주권자로 대우받고 있는가?



- 우리의 학생들은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보다는 ‘미래의 시민(becoming citizen)’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시민의 자격을 유예하고 있음 우리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정치참여권 유예됨
 - 학생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함
 -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이자 토대이며, 이 전제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함
- ‘존엄이란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가치와 취약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도달하게 되는 내면의 평온한 상태(도나 Hicks)’라고 정의하면 학생은 본질적 존재(fundamental being)임
 - 우리는 학생들을 기능적 존재(functional being)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동원의 대상?
 - 기능적 존재로서 우월과 열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인간 존재의 위계 중 맨 아래를 차지
 - 질문이 없는 교육과 통념이 지배하는 학생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절대적 피해자’일 수 있음. ‘당돌한 학생’보다 ‘학생다운 학생’을 높이 평가함
-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다움의 통념을 해체하고 ‘학생의 시민주체화’라는 언어필요
 - 학생들이 시민 권리의 담지자이자 본질적 존재로서 대우 받고 있는가?
 - 학교와 사회에서 어른의 동반자인가?
 -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어른들의 동료인가?
- 학생을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실천하는 시민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
 - 교육적 맥락에서는 혁신교육 추진 과정에서 학생존재에 대한 인식 전환, 학생인권조례, 배움중심수업,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기조, 미래사회담론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적 존재임.
 - 사회·정치적 맥락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삶에 대한 각성, 촛불집회를 통한 실천 과정에서 학생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존엄하게 대접받지 못한 존재가 존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 민주국가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함. 민주시민 없이는 민주국가도 없음
 - 시민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의 축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임
 -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 학생에게 시민의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함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전제 조건은?

하나. 우리는 학교시민들을 일반 시민들의 동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둘. 우리는 학교시민들을 지역사회 문제의 이해와 해결 과정에 동료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시민들이 자신의 학교, 지역,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셋. 우리는 학교시민들이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책임 질 수 있는 교과목이 있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누가 이 사회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 이 사회를 위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 나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 우리 학교의 학문 중심 교과목의 현재 모습은?

생각과 사이 / 김광규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지성사, 1979)



4.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중 교육과정의 요구와 기타 사회 요구]



- ▶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한 시민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이라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평화교육, 정치교육 등을 포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민주시민교육을 분절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각각의 영역이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의 의미를 가지며 영역별 시민교육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림 앞의 10가지 중 한 개영역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보고 있다. 이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초점이 없는 양상한 민주시민교육’에서 ‘차별화된 초점을 갖는 시민교육’으로 발전 하려면 한다.

▶ 현재의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의 상황은 ‘초점이 없는 양상한 민주시민교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시민교육에서는 위의 첫 번째 입장에서 더 나아가 ‘차별화된 초점을 갖는 시민교육’이 되어야 하며, 위의 그림에서 나열된 사안별 시민교육의 영역을 더 많이 포괄해야 한다. 학생들이 늘 자신들이 ‘시민’ 교육을 받고 있다고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 1993년 교육부가 바란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은?

1993년 교육부는 장학자료 제96호로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를 전국 각 학교 당 두 권씩 배포하였다. 이 자료 16쪽에 “여기에 제시되는 사항들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하나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교육부(1993),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 장학자료 제96호 pp.16~26 참조)

- 가.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
- 나.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따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 다. 민주시민교육은 도덕, 국민윤리, 사회 등의 특정 ‘전담’ 교과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 라. 학교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 마.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바. 가정 및 사회적 요인 때문에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해서,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사.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면 연령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과 지도 활동과 학교·학급운영을 둘러싼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인간 관계에 기초하는 학교 문화 풍토를 민주적인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 자. 민주적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과 우유 부단 및 자유 방임은 구별되어야 한다.
- 차. 민주시민교육은 결코 반민주적, 비민주적 방법을 용납하지 않으며, 풍토와 관련하여, 소위 ‘잠재 학습’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카. 풍토 형성의 책임자로서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먼저 자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타. 제도나 법이 보장하는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학교와 학급을 운영해야 한다.
- 파. 의사결정과정은 개방적인 것이 되어야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집단 구성원들의 협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하. 공동 관심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 거. 대화·토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비판적인 사고와 발표를 조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6.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은?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과 관련법률 내용]

교육기본법 조항	관련 법률	관련법률 내용
제2조(교육이념)홍익인간... - 인격도야 - 자주적 생활능력 -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교육) ③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보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조항	관련 법률	관련법률 내용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차관
교육기본법에 관련 내용 없음	경제교육 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교육기본법에 관련 내용 없음	환경교육 진흥법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기본법에 관련 내용 없음	법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조항	관련 법률	관련법률 내용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7.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 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8. 주요 유럽 국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까?

▷ 유럽의 시민교육 과목 도입하게 된 공통 배경 : 1980년대 전후 분과학문중심의 교과가 담지 못하는 사회적 요구(시민적 권리와 책무, **학교 폭력**, 정치적 무관심, 선거 참여율 하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함

▷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교과목화 추진 당시의 집권당의 정치적 슬로건 :

-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사회당, 1969년) : “민주주의를 감행하자!” (“Demokratie wagen”)
- 프랑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사회당, 1981년) : “삶을 바꾸자” (“Change la vie.”)
-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신노동당, 1997년) : “교육, 교육, 교육”

※ 한국 문재인 대통령 : (2012년) “사람이 먼저다”, (2017년) “나라를 나라답게”



▷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학교시민교육 추진 배경 :

- 독일 : 독일 사회당은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해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목표로 설명하면서, 반권위주의교육·비판교육·저항권교육 등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 정착되어감.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의에 의해 더욱 안정적인 정치교육을 시행함
- 프랑스 : 프랑스 사회당은 미테랑 집권 후 80년대에 이르러 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주장은 정치권,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준비에 들어감
마르크스 사상을 비롯한 급진적 비판의식의 퇴조,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특히 학교 폭력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1985년 11월 14일 슈벤느망 교육부 장관은 시민교육의 부활을 선언하고 시민교육은 초·중학교의 필수과목(주1시간)으로 지정함
그 이후 교사들의 요구로 1998년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
- 영국 : 영국은 1997년 총선에서 ‘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교과목을 추진하기 시작함
1997년 총선에서 드러난 사상 최저의 선거율과 급증하는 청소년 문제와 다문화주의는 영국 사회에 다시 한번 결속하고 통합해야할 계기와 이유를 제공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당이 시민교육 교과를 도입했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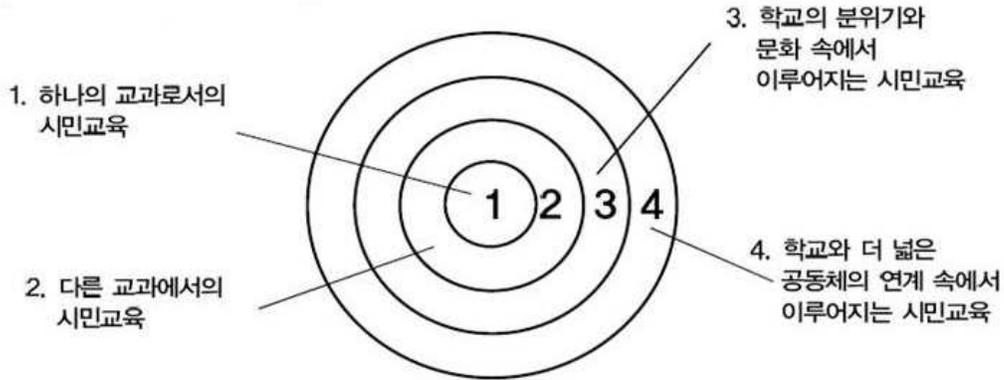
▷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학교시민교육 추진 결과 :

- 독일 : 1970년부터 ‘정치교양(Politische Bildung)’과목 주별로 지정, 1976년 ‘보이텔스 바흐 합의’ 안 도출 및 일반화
- 프랑스 : 1985년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초·중 필수과목, 1998년 고교 필수과목
- 영국 : 2002년부터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초등 선택, 중등 필수과목 지정(2002년 잉글랜드 적용, 2003년 이후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정)
- 유럽 대부분 국가 :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핵심 국가교육과정의 법정교과를 통해 제공하며 연방제 국가에서는 자치주별로 별도로 제도화함
- 유럽 외 국가들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시민교육을 과목화함



9. 학교 시민교육 과목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민교육(학습) 과목의 위상과 역할]



Citizenship Foundation(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Hodder Murray. London. p.49.

[시민교육(학습) 과목 역할의 이해]

위 역할 그림에서 독립된 ‘시민교육(학습)’ 과목이 그 밖의 시민교육 교육과정 시행 방법들과 결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 1]에 위치한 시민교육 과목이 [원 2]에 위치한 국어, 도덕,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시민교육 매개 교과와 민주시민 교육적 요소를 융합하고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 1]에 위치한 시민교육은 매우 적은 시간(영국의 경우 주당 1~2시간)으로 충분하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매개 교과와 민주시민교육적 요소들을 통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촉진하고 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민교육(학습)’ 담당교사는 [원 3]의 학교의 민주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원 4]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연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교육(학습)’은 학생과 학교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핵심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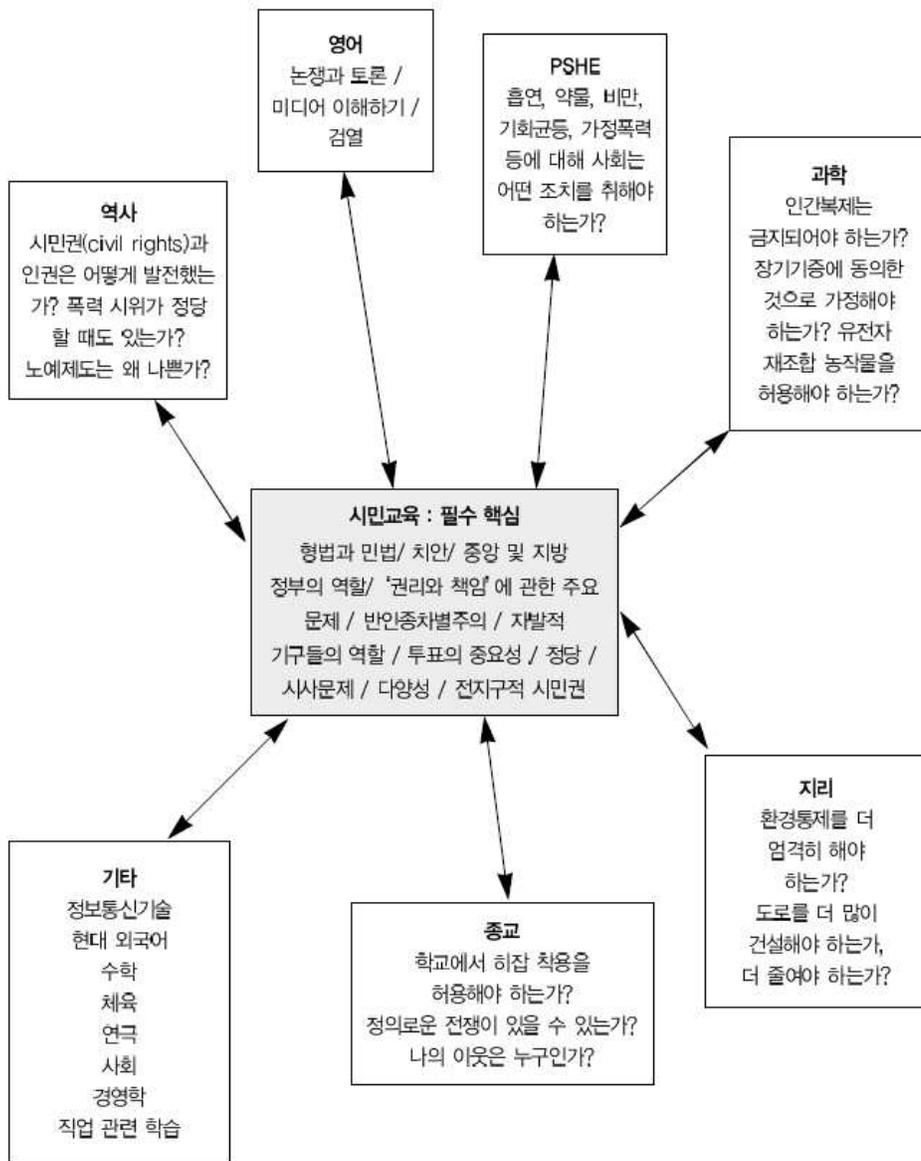
3가지 측면에서 시민교육(학습)과목의 독립된 수업을 시민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줌이 시민교육(학습) 과목이 눈에 띄며(visible)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함
 모든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줌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학교와 더 넓은 공동체(지역사회와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시민교육 활동을 결합시키고 구심점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함(Citizenship Foundation(2006). p.49 참조)



10.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교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다음의 사례는 영국의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교과와 매개교과의 유기적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필수 **핵심교과**로서 시민교육(Citizenship) 자리하면서 다른 **매개교과들**(역사·영어(국어)·개인 사회건강교육·과학·지리·종교·기타 과목)과 역할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시민교육 과목이 필수조건이라면 매개교과들과의 연계가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학교 시민교육에서 핵심교과와 매개교과의 이해]



Citizenship Foundation(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Hodder Murray. London. p.61.
Citizenship Foundation(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 신순미 역(2008), 『영국 시민교육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과목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은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학년당 3시간씩, 중학교 학년당 3시간씩, 고등학교는 학년당 3시간씩 배정되어 있음. 이 시간에는 창체의 4가지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창체 시간과 교과별 수업시간에 10대 범교과학습 주제를 다루도록 규정함.
- 창체의 ‘영역별 지킴’,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 등 민주시민교육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창체의 많은 시간이 지킴이나 방향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방침의 상태임
- 이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1/3 정도로 시민교육(학습) 교과로 특정하여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영역별 지킴’,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이 명확히 운용되도록 해야 함.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시간배당기준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408	408
	사회/도덕	국어 448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새 교육과정 초등학교 시간배당기준 (안)

구 분	1~2학년 (3.8%)	3~4학년 (3.4%)	5~6학년 (3.1%)	
교 과 (군)	시민학습	시민학습 (68)	68	68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바른 생활 128	272	272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		
	과학/실과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76	1,836	2,040	
창의적 체험활동	268 안전한 생활 (64)	136	136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는 총 수업시수에서 시민학습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시간배당기준

구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새교육과정 중학교 시간배당기준 (안)

구분		1~3학년(3%)
교과(군)	시민학습	102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162
창의적 체험활동		204
총 수업 시간 수		3,366

※ %는 총 수업시수에서 시민학습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시간배당기준

교과영역	교과(군)	공동과목(단위)	필수이수 단위	자율편성 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 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새교육과정 고등학교 시간배당기준 (안)

교과영역	교과(군)	공동과목(단위)	필수이수 단위	자율편성 단위
기초	시민학습	시민학습(6)	6 (2.9%)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국어	국어(8)	10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 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100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는 총 수업시수에서 시민학습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 시민교육(학습)을 책임지는 과목이 기초교과로 존재해야 한다.
- 시민교육(학습)은 유치원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과목 담당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감행자 역할)



12. 시민교육 과목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중학교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이 적용 가능함(초등·고등학교 동일)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시간배당기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 배정(안)		
구 분		1~3학년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영어	340
	선택	170		선택	170
	소계	3,06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시민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306	창의적 체험활동		204
총 수업 시간 수		3,36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102시간을 학년별 34씩 배정하여 매학년 1시간씩 시민교육(학습) 과목에 배당할 수 있음(초등·고등학교 동일)



13. 창체나 범교과학습주제 외에 한 가지가 더 교육과정에 더해지는가?

- 아래의 창체 활동 내용과 10대 범교과학습 주제, 그리고 ‘학교폭력’, ‘스쿨미투’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 등을 이 교과와 내용으로 함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내용	10대 범교과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활동 - 자치·활동, 창의주제활동 등 ● 동아리활동 -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 ● 진로활동 -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실제로는 시민교육(학습) 교과목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체 시간에 체계성, 목표성, 효과성 없이 다루어지는 영역들이 책임있게 학습되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재탄생하는 것임.
- 현재 범교과학습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로 규정된 ‘민주시민교육’ 주제를 재구조화하여 시민교육의 관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법령에 의한 시수 조정 등)



14. 일반 교과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는가?

[차별화된 초점]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다시 말해서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과 관계있는 시사성 있고 일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복지, 대중교통, 치안, 국제관계, 인권, 민주주의, 통일, 언론, 선거와 투표, 미디어의 작동, 과세와 공공재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으로서의 청소년, 즉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친구에게만 관련된 문제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분	개인의 문제 (개인상호간의 의사결정)	시민교육의 문제 (공공정책)
특징	사적인 개인으로서 학생의 선택의 문제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하는 선택의 문제
사례	구직 신청	최저 임금의 사회적 의미
	음주	음주에 관한 법률의 사회적 영향
	어떤 스타일의 친구를 선호하는가의 문제	그 친구들의 정치적 견해
	흡연으로서 개인이 치루는 비용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이나 담배광고 같은 문제를 탐구하면서 사회가 치루는 비용

[차별화된 학습 접근 방법]

시민교육 학습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한다. 청소년들은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교실에서 토론을 통해 배우고, 학교생활과 더 넓은 공동체에 참여하여 배운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학습을 발전시키고, 또 학습을 ‘실생활’ 환경에서 실행에 옮길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현실적이며 시사성이 있다 -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 때로는 민감하다 -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 있는 문제일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종종 논쟁적이다 -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각자의 확고한 견해를 견지한다.
- 궁극적으로 도덕적이다 - 사람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Citizenship Foundation(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Hodder Murray. London. pp.14-15.



15.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조건은?

1. 어린 시민들을 동료·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동등성)
2. 학교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현재성)
3. 시민교육은 능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권리이다. (보편성)
4. 시민교육은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포괄성)
5. 시민교육은 매 학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졸업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성)
6.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 (핵심성)
7. 시민교육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현실성과 시사성)
8. 시민교육에 다루는 사회문제는 학생들의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 있는 사회문제일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민감성)
9. 시민교육에 다루는 주제는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쟁을 거치면서 각자의 확고한 견해를 견지한다. (논쟁성)
10. 시민교육에 다루는 사회문제는 사람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덕적이다. (도덕성)

16. [결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
- 공감과 연대, 포용과 배려의 감성을 지닌 시민
-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교양이 있는 시민
-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문제 제기력,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시민
-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시민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의 분야에 대한 교양(정치적 문해력)이 있는 시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질문들]

- 누가 사회를 통제해야 하는가?
-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이 시대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이 특정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0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례

[부제]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가?

박종훈 (前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변호사)

1. 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신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생똥맞지만, ‘인권’의 전문가는 누구인가? 이것이 좀 어려운 질문이라면, 좀 더 쉬운 질문인 교육의 ‘전문가’는 누구인가? 여러분, 즉 교사는 오늘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부모, 학원 강사, 교육평론가, 정치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전문가임을 자처한다. 그러다보니 교육 현장은 외부와 끊임없는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몇몇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든, 반성에 의해서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충분히 내재화하기 전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교육 현장으로 들어올 때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교육정책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이 학교와 인권에 대한 자신만이 관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인권을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학생인권’에 대한 당위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학생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하여 아래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교육-학교-교사-민주시민교육-인권-학생의 연결고리를 이어보고자 한다.

2. 질문 하나,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들어보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만 살펴보겠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등 학생인권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학생인권지킴이’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의 구제를 고민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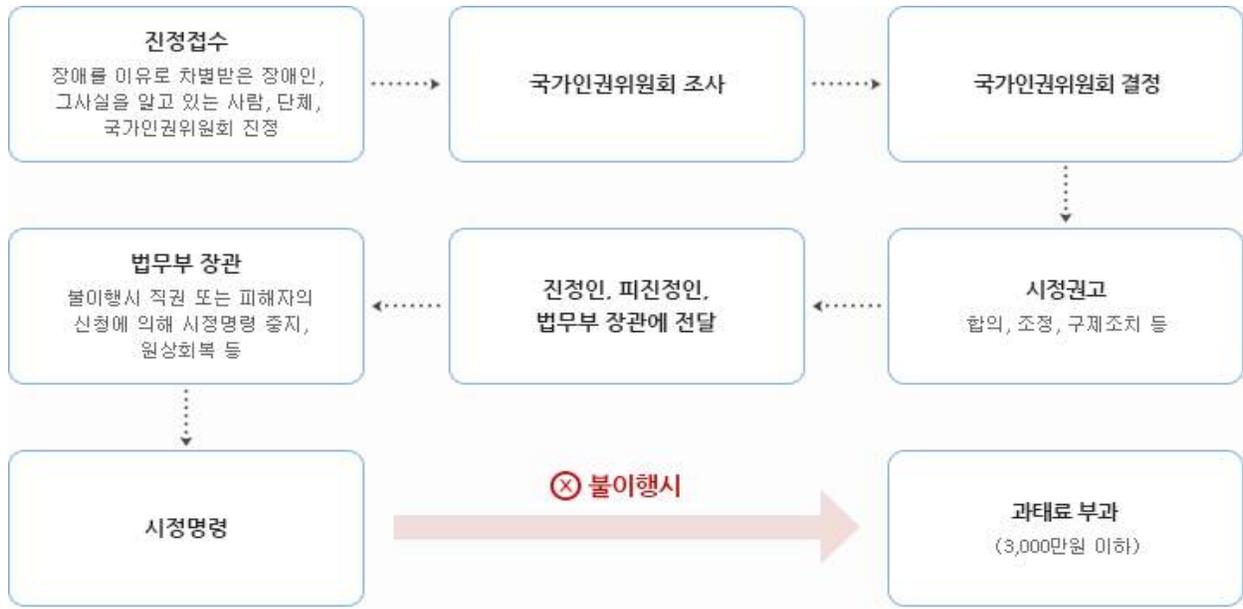
개발 지원, 정기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권고 □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업무지원 □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일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32139155&code=940401)>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교육청 내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퍼슨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옴부즈퍼슨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의 고충을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구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옴부즈퍼슨 제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인권이라는 영역은 사법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두어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이나 상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인권 침해를 인지하는 경우, 비사법적 조치로서 신속하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6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구제절차>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징계·처벌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인권옹호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직접 징계·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감사 청구 등 교육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인권과 교권을 중시하지 않고 학생인권만 챙기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이 보호되니 교권이 추락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구도로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분쟁이 문제가 됐을 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학교의 분쟁이 커지기 전에 중재하는 노력이 많이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3월 초대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어 학생인권옹호관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크게 학생인권옹호관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 운영과 같은 행정지원, 인권 상담 및 권리지원,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센터장인 학생인권옹호관 외에도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고 전문 인권조사관 4명, 인권교육을 위한 장학사 및 행정보조를 위한 주무관들을 배치하고 있다.



<참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체계도>

뿐만 아니라 2016. 4. 부터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명실상부한 서울교육인권센터로 거듭나게 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 인권전문관과 성인권정책전문관까지 새롭게 배치하면서 확대 개편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는 전문 인권조사관이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11.30. 기준)

구분	인권상담					현황		
	전화	방문	사이버	기타	계	간이 조치	안내 후 종결	기타
2012년	1,229	33	38	12	1,312	461	608	243
2013년	843	13	71	0	927	114	796	17
2014년	643	14	17	0	674	54	610	10
2015년	722	31	376	7	1,136	84	1,049	3
2016년	789	14	539	1	1,313	9	1,297	7
총계	4,226	105	1,041	20	5,362	722	4,360	280

<참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상담 통계>

인권조사관들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해다. 교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상담하고, 관계 부서와 연결해 줄 수 있으며, 학생들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실제로 교사들도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미리 상담을 구하는 등 학교에서도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 각 권역별 담당 인권조사관 4명이 학생인권상담

동대문/중랑/광진/성동/강동/송파구 ☎ 02-3999-081	용산/종로/중구/노원/도봉/강북/성북구 ☎ 02-3999-082
마포/서대문/은평/강서/양천구 ☎ 02-3999-083	구로/금천/영등포/강남/서초/관악/동작구 ☎ 02-3999-084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금요일 08:00~17:00)
- 방문상담 : 학교보건진흥원 4층 415호 학생인권교육센터
- 홈페이지 : <http://studentrights.sen.go.kr>→신고상담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까지 모두 포함)의 경우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존중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학생의 성찰·실천·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 12. 기준)

구 분		대 상	년도별 교육인원			
			2014년	2015년	2016	합계
직무 연수	학생인권	교원	346	342	218	906
	성인권		-		60	60
	노동인권			27	55	82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학생	10,298	16,132	10,300	36,730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학생		3,446	8,152	11,598
학생참여단		학생참여단	50	100	100	250
학교 인권동아리 지원		학교	8	30	199	237
합계			10,702	20,077	19,084	49,863

<참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통계>

앞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는 점차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안에서도 인권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홈페이지	웹주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studentrights.sen.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http://edu.humanrights.go.kr

그리고 인권 옴부즈맨인 인권옹호관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책권고, 인권 모니터링을 한다.



권고 2016-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정 책 권 고

사 건 15-직권-17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침해

주 문

1. 서울특별시 학교배정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을 확인한다.

사 례	문 제 점
1 	아빠+엄마+아이로 구성된 "정상가족" 중심의 이미지가 활용 이 빈번하여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구성원을 소외시켜 "결손" 이미지 강화
2 	사례1과 마찬가지로 "정상가족" 이미지 강조, 특히 생계부 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을 표현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 생산하고 남성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음
3 	자녀의 건강관리에 있어 '엄마'에게 주된 책임을 부여, 양 육에 있어 성별고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4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책임 강조는 유의미하나, 여성양육자 와 남성양육자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며 고정불변의 영역 인 것으로 상정하고 인성관련 9가지 영역(강인함, 자신감, 나눔, 이성, 독립성, 관용, 책임감, 감사, 습관)이 남성의 고 유한 특성인 것처럼 비춰져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강화 할 수 있음
소 결	"정상가족" 강조 및 성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재현 지양하고 문구나 이미지를 선별 해 사용하는 것으로 성차별적이고 성별고정적인 요소를 완화 예) 사례3의 경우 '우리 아이를 위해 알아야 하는 소아비만 관리법' 혹은 '부모가 알아야 하는 소 아비만 관리법'으로 표현 가능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인권 거버넌스 기구로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두어 교육청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자문 및 권고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을 쓰고 있으며,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0명 이내로 운영(임기2년)
- 학생인권조례 제33조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심의 및 결과 평가
 - 인권옹호관 조사결과 심의.구제 권고
 -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권고
 -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한 의견표명

역시 조례에서는 교육감에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참여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청의 인권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들로 공개모집, 100명으로 운영(임기1년)
- 학생인권조례 제37조
 -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이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정책 중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학교에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육, 그리고 교사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찬찬히 살펴보겠다.

3. 질문 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의무인가?

홈스쿨링(home schooling)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홈스쿨링이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거나, 25시간 미만의 수업에만 참석하고,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도권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1990년 말경



홈스쿨링이 알려진 이후로 점차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에서 홈스쿨링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홈스쿨링에 대한 논의는 곧 ‘공교육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즉, 과거에는 학교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점차 학교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을 각자 던지게 된 것이다. 이 질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자체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즉 인류가 무리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지식의 전달이 필요했고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진보해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교육’은 특정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철학에 대한 교육이나, 중세 유럽에서 개인교사를 통하여 가정별로 하였던 맞춤형 교육, 그리고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의 서당을 통한 교육과, 그 유명한 조선 시대의 성균관을 통한 교육도, 그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일정의 특권에 가까웠다. 즉 교육을 받을 기회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 교육은 나라의 상류계층이라면 알아야 할 ‘교양’에 가까웠고, 그것이 상류층에게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교육받을 기회의 불균등함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국가의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왕정과 같은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동체를 민주시민으로서 길러내야 한다는 필요와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로 성실한 노동자와 충성스러운 군인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교육제도 아래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게 되는, 즉 교육이 권리이자 의무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 학교제도는 19세기를 전후한 시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두 나라 모두 학교제도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교육 보다 훈육에 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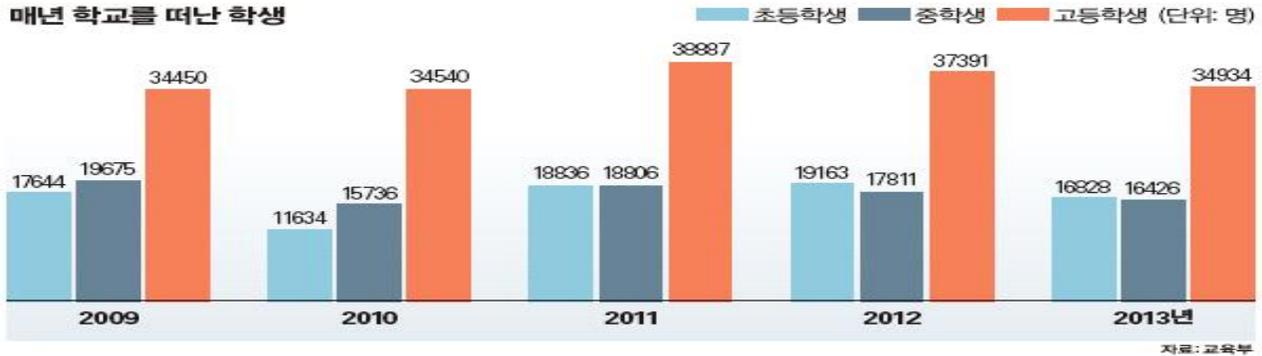
그러나 학교 제도가 생긴 처음에는 교육이 국가의 필요, 즉 훈육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국가의 필요 중 후자와 같이 지나치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 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공동체 속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전자에 더욱 집중하게 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누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공부하게 된 것은 이제 겨우 한 세기 가량 된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는 현대인의 일생 중 20%가량을 차지할 만큼 개인의 삶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학력주의, 학교폭력, 학업실패로 인한 자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시발점으로 하여 왜 학교에 가야하는가? 학교가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과 함께 학교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특성이 학교를 있게 한 것이며, 학교는 국가와 사회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공공선 안에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가 우리 역사에서 불과 19세기 말에 생겼을 뿐이고 그 전부터 우리는 개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과 앞서 발생하는 학교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통한 교육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매년 학교를 떠난 학생



학교를 떠난 이유

(단위: %, 고등학생 기준)



<출처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9593>>

2013년 기준 통계를 보면, 7만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그 중 50%의 학생은 학교에 대한 부적응을 이유로 꼽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전당으로서 학교와 제도로서의 학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때문이다. 스승과 제자가 인격적 감화를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목가적인 장면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는 근대에 새롭게 생긴 제도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하기 위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편한 공간 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일일 수 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야 할까? 먼저, 과거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화 된 현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시민



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선을 고민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발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 독일의 경우처럼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하여 아이들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최전선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다음에서 살펴보자.

4. 질문 셋, 민주시민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인권’인가?

민주시민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법령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민주국가의 발전’이며, 그것을 위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이 ‘자주적 생활능력’, 즉 자기의 ‘밥벌이’를 하게 하는 교육을 무척 잘해왔음을 크게 부정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에도 성공하였는가? 사실 이 두가 능력은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소위 글로 배울 수 있지만, 후자는 ‘경험’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에서부터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시민’은 어떤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처럼 시민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사회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시민은 개인과 현대 민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관계인 권리(지위), 즉 ‘시민권’과 함께 의무(역할), 즉 ‘시민성’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공동체와 관계 혹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지위(권리)와 역할(의무)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사회는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곳에 있는 불특정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행위 주체자의 집단 의식, 즉 합의된 정체성이야말로 사회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틀이 된다. 이 합의가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리이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초월하거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이나 개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국가나 사회 같은 공동체와 분리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공동체와의 관계 혹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어떤 지위(권리)와 역할(의무)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시민권’과



인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먼저 ‘인권’은 첫째,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이고, 둘째,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며, 셋째,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인권의식의 발달로 시민혁명이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몽주의자들의 인권 사상을 수용해 새로운 헌법, 정부, 국가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헌 근대국가가 인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한 ‘시민들의 권리’만을 보장했을 뿐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까지는 보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실의 역사에서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즉 ‘사회공동체 내의 권리’인 시민권은 개인의 인권의 그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그 권리 전체를 제대로 누르려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	기본권	시민권/시민성
정의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 권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성원(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자격 및 요건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내용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세대 권리: 연대권, 발전권, 환경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 (노동권, 교육권 등)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환경권 등)	국적 정치적 공동체(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사회적 멤버십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과 의무 시민의 의식과 실천 (정체성, 덕성, 능력 및 참여)
성질	천부적 권리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소원의 근거	정치공동체 성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특징	초역사성, 초실정성, 초국가성, 보편성, 절대성, 불가분성, 무조건성, 이념성, 불명확성	국가 단위의 헌정 질서에 의해 정리된 권리	국가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를 상정 시민으로서의 자격: 권리-의무의 관계, 시민의 자질-능력을 내포 시민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 발생 탈국가적 시민권, 다문화적·지구적 시민권 문제 발생

<인권, 기본권, 시민권의 비교>(홍성수, 인권과 기본권, 시민권: 무엇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할 것인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제10차 인권교육포럼, 4.23., 국가인권위원회)

즉 민주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이상에서 살펴본 시민성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 인정교과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어떤 방법으로 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겠는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훌륭한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충분한 과정을 거치며 학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태도는 ‘실천’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은 단순히 ‘앎’으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듯 용기 있는 시민이 되려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이 되어 가는 참여의 경험은 현대적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시민성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시민권/시민성을 ‘위한’ 실천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권(성)을 ‘위한’이 가능하려면 시민권(성)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시민권(성)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시민으로 전락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적 시민이 되려면 비판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권/시민성을 위한 기대는 가정과 학교의 일차적 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그리고 아동기와 청년기에 나이에 맞는 참여를 하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기회를 가질 때 고양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듯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사회 환경 속에서 민주적 시민권이 고양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기회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어떤 학생을 양성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고민 없이 주어진 틀에 갇혀 사는 아이들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공동체와의 관계 혹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고민하는 시민인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다는 것은, 그렇게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학교라는 공동체에서의 공공선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바로, 오늘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가 바로 학생인권의 주인공이다.

5. 질문 넷, 학생을 시민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출석부상 번호 부여 시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005.9.28. 결정)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다.



성적우수자반 운영에 의한 학생인권 및 평등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0.02.21. 결정)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반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성적에 의한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28 결정)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5헌마1189)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
-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3차 권고(2011년)】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학교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 사항 (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 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정식 명찰 부착 강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09.11. 결정)

○○지역 일부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 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교실내 CCTV 설치 관련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2. 2. 결정)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교실내 CCTV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서약서 등 제출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직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 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합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9. 10. 12. 결정)
- 2)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 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5. 12. 26. 결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3차 권고(2011년)】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 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 위반(2005. 9. 28. 결정)
- 2)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8. 2. 28. 결정)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1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 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권고



6. 질문 다섯,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인권보장 규정	인권 제한 규정
교육 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 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책무와 의무】

-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 3)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4)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내질서를 존중할 의무
- 5) 교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존중할 의무

이상의 법령에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고, 학생은 교사와 학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교사부터 인권 제한의 원칙들을 고민해보면서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래의 과잉금지 원칙은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교육적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이런 고민들을 먼저 나누고 있는 교육 현장을 상상해본다.



【학교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가) 법령유보

- 제한은 법령과 교칙에 정한 내용과 절차에 의하고 있는가?

나) 과잉금지의 원칙

① 교육목적의 정당성

- 제한이 자의적 교육목적이 아닌 법령과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것인가?

② 방법(수단)의 적정성

- 제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단인가?

③ 피해(침해)의 최소성

-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한 것인가?

④ 법익의 균형성

- 제한에 의하여 발생하는 학생의 교육적 손실을 비교할 때 제한과 교육적 손실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가?

<참고문헌>

권재원,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한국학술정보(주), 2008.

공현 외 5인,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에듀, 20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조성을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서울시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 서울시교육청, 2016.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2014.

오동선,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 아카데미프레스, 201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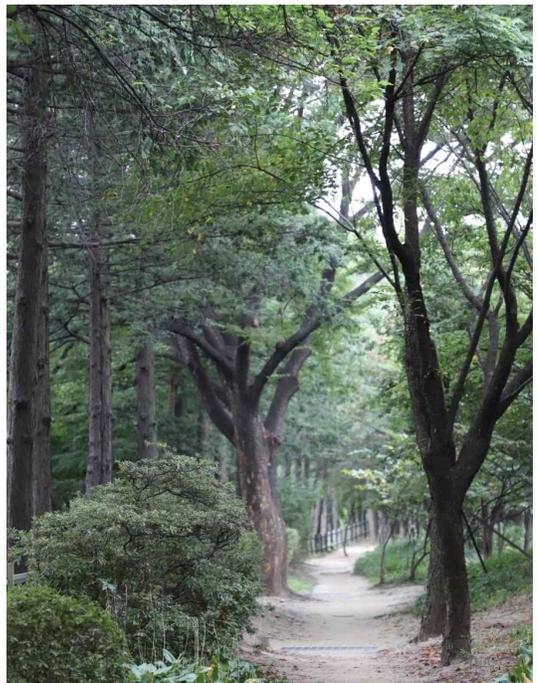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부제] 남산 둘레길 산책과 함께하는 자기 성찰

선 보 라 (장평중학교 교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에게 나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을 깊이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을 할 때에는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자들과 함께 리케이온 정원을 산책하며 강의하기를 즐기지 않았을까요?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산책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숲은 우리의 기분상태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숲 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긴장과 우울, 분노, 피로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biophilia)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생명, 즉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따라 디자인 업계에서는 ‘바이오필리아 효과’에 따른 디자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필리아 효과란, 자연에 둘러싸여 있거나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이나 치유, 정신 집중이 필요한 곳에서는 바이오필리아 효과를 염두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이미지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설계하거나 학습을 꾸밀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아지는 때인 아침에 남산 둘레길을 산책해보세요! 산책을 통해 남산의 자연을 느끼고 이번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되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남산 둘레길 안내도>



남산 둘레길에는 5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산림숲길 - 야생화원길 - 자연생태길 - 역사문화길 - 북측순환로>

둘레길 코스는 총 7.5km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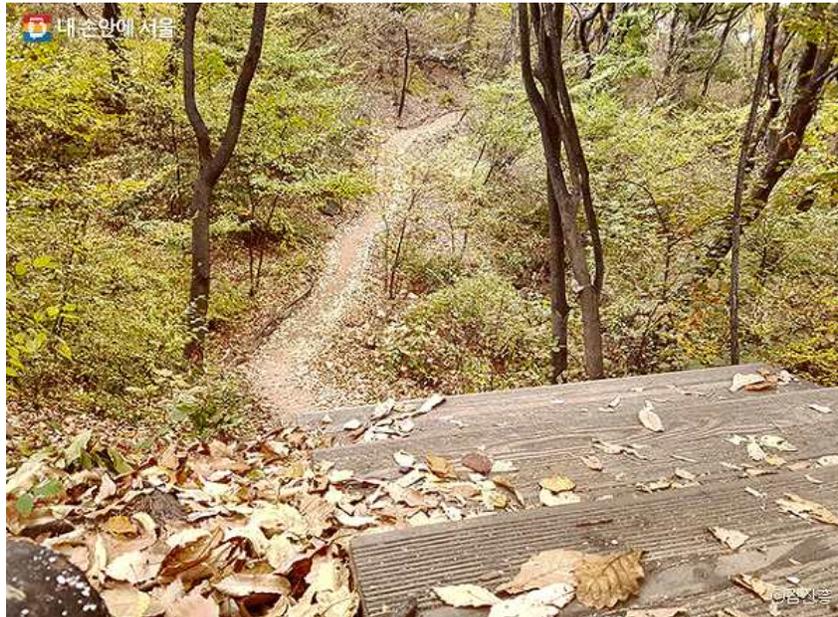
난이도 보통의 길이라 걷기 쉬운 길입니다. 도성도 걷고 역사기념관도 보고 쉬엄쉬엄 걸으면 3-4시간은 충분히 걸립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서울유스호스텔은 북측순환로에 가까이 위치해있습니다. 숙소 뒤편으로 이어진 북측순환로는 2007년에 탄성포장된 차량 없는 산책길입니다. 걷기에도 편해서 자연을 느끼기에 그만인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고 산책길을 걸어 보세요. 각 코스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을 참고해주세요.



<산림숲길>



산림숲길은 남산 순환 버스 정류장에서 야생화원까지의 910m 숲길입니다.
 대부분 짚을 엮어 만든 깔개가 깔려있고, 숲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의 남쪽 끝에는 남산 약수터가 있어 목을 축이고 갈 수 있습니다.



산림숲길의 볼거리로는 남쪽에서부터 서울타워 꼭대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양성곽’이 있습니다. 수도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내사산(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연결하여 쌓은 도성입니다.

<야생화원길>



자연학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야생화원길은 남산 야생화공원에서 야외식물원 쉼터까지의 880m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에 붙여진 이름답게 꽃과 나무를 감상하기에 좋은 산책길입니다. 특히 야생화원길에는 72종의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외식물원과 야생화공원은 1997년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있으며, 동쪽에는 186종의 야생화와 93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야생화공원 근처에 있는 ‘팔도 소나무 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식재한 소나무 80그룹이 있는 곳으로, 전국의 소나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길>



자연생태길은 야외식물원 쉼터에서 사색의 공간 쉼터를 지나 벚꽃길 끝에 있는 소월시비 쉼터까지 1,650m로 이어지는 산책길입니다.

이 길에는 소생물권 서식지, 남산제비꽃 군락지, 남산공원 습지 등 생태자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반딧불이 성충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반딧불이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문화길>

역사문화길은 소월시비 쉼터에서 북측순환로 쉼터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양도성길과 맞닿아있고, 남산정상을 향하는 계단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640m로 가장 짧은 길이지만, 남산도서관, 안중근의사기념관, 호현당, 삼순이계단 등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북측순환로>

탄성포장된 북측순환로는 남산케이블카 앞 북측순환로 입구 쉼터에서 국립극장 앞 남산순환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입니다. 3.4km에 이르는 가장 긴 코스로, 편도 42분정도 걸립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가볼만한 곳으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한 ‘남산 소나무 힐링숲’은 2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을 산책하고 솔잎차와 아로마 마사지를 즐기며 명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산의 옛 이름인 목멱산에서 탄 ‘목멱산방’은 비빔밥과 차를 즐길 수 있는 한식전문점입니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07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초등)

장대진 (신용산초등학교 교사)

1. 교실에서 어린이나라 운영하기

가. 평화로운 학급을 위하여

교사들은 누구나 평화로운 학급을 꿈꿉니다. 하지만, 평화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규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규율을 통한 평화는 제한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학급은 그 교실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규칙과 이에 대한 준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모색합니다. 이 장에서는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활동 중에서 어린이 나라 만들기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즉, 국어, 도덕, 사회 등의 모든 교과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체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이 나라를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직접 학급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고, 법을 만들며, 경찰, 검사가 되어 보고, 재판을 하면 평화로운 학급에서 꼬마민주시민으로 자라나지 않을까요?

나. 어린이 나라(학급 자치활동) 만들기

1) 벤푸스타 어린이 나라 맛보기

혹시, 벤푸스타 어린이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벤푸스타 어린이 나라란 1956년 실바 신부와 열다섯 명의 아이들이 스페인 오렌세에 세운 공동체로, 인종과



종교가 다른 여러 아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곳을 이웃 사람들은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벤포스타 나시온 데 무차초시’, 우리말로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라는 뜻이고 벤포스타란 이곳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포도농장의 별명으로 ‘위치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주민총회, 의결기구, 어린이들이 만든 법과 규칙이 통용되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벤포스타 어린이 나라를 학급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먼저, 학생들에게 EBS 지식채널e의 ‘웰컴 투 벤포스타’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 학급의 어린이 나라 만들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시킵니다.

2) 권위 수업하기

학생들 마음속에 어린이 나라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어린이 나라의 국회의원, 대통령 등을 뽑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을 뽑는다면 어느 일반적인 학급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활동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어린이 나라 만들기를 하기 전, 권위(Authority)와 관련한 수업을 합니다. 권위는 정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강제적으로 지시하는 힘이고, 이는 선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적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권위에 대하여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합니다.

- 가) 권위와 권위 없는 힘
- 나) 권위의 뿌리
- 다) 권위를 가진 자격 선출

3) 학생들에게 어린이 나라 설명하기

어린이 나라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 나라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어린이 나라의 여러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가) 대통령

대통령은 어린이 나라를 대표하고, 어린이 나라 친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과 만나서 새로 제·개정 된 법과 그에 따른 운영 방법, 평가, 반성 등을 합니다.

나)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대하여 다른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다수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교실 뒤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매주 월요일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 후 1주일이 지나면 그 법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법률안을 만들어서 교실 뒤 게시판에 붙입니다.

라) 경찰

경찰은 잘못된 행동(법을 어기는 행동)을 못하게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기록했다가 검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담당하는 경찰을 정해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법과 '숙제를 꼭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을 경우,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어긴 학생들을 기록하는 경찰과 '숙제를 꼭 해야 한다'라는 법을 어긴 학생들을 기록하는 경찰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각 3번을 하면 청소를 한다'라는 법이 있다면, 어느 학생이 몇 번 지각을 했는지를 잘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경찰들에게 별도의 공책을 마련해서 주면 좋습니다.

마) 검사

검사는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법을 위반한 학생 명단을 받으면, 그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법에 따른 벌을 안내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 검사가 이를 확인해보고 이의가 정당하면 그 벌은 없던 것으로,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이 때에도 그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검사로부터 재판 신청이 들어오거나, 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할 경우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 재판을 맡을 판사를 지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재판 받는 피고인을 도와줄 변호사와 이 재판의 검사를 확인하여 이 모두를 공고문에 적습니다. 재판 날짜는 1주일 뒤쯤으로 합니다.

사) 판사

판사는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재판은 3심이 원칙이지만, 1심으로 합니다.

아) 변호사

변호사는 재판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타

기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부서를 만듭니다. 실제 나라의 행정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린이 나라 역할 정하기

어린이 나라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어린이 나라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정합니다. 즉,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학급 학생 수를 고려하였을 때 각 역할별로 몇 명을 맡게 할지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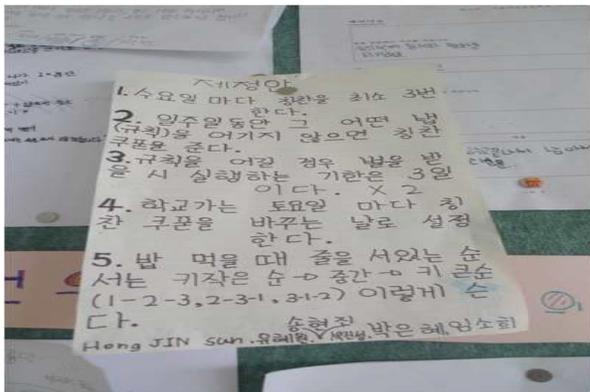
가) 필요한 역할 정하기

어린이 나라 만들기를 적용할 학년이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역할을 정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부서를 정합니다.

나) 각 역할별 인원 정하기

그다음으로 각 역할별 인원을 정합니다. 이 때 학급 학생 수를 고려하고, 남녀 학생들이 서로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역할은 경찰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벌을 어겼을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확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남녀 중 특정한 성별을 가진 학생들로만 이루어질 경우, 반대쪽 성별을 가진 학생들이 사사건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반드시 남녀 동수로 인원을 정합니다.

5) 어린이 나라 구성하고, 생활하기(국회의원의 법 만들기, 재판하기 등)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의 예>



<재판 중 증인선서 과정>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자치활동

- '권위'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 이야기

1) 목적

가) '민주주의 vs 독재'의 프레임을 '권위가 있는 힘 vs 권위가 없는 힘'의 프레임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다른 시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권위’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읽으면서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에 대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결합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방침

가)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이 직접 ‘권위를 가진 법(규칙)’을 만들고, ‘권위를 가진 직위’를 선출하여 실제 학급에 적용한다. 나아가 가능한 학급에서는 ‘우리 어린이 나라’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나) 한정된 시간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함으로 사회 시간 이외에 아침활동 시간과 국어, 도덕 등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다) 사회과 1단원 내용 중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영화(화려한 휴가) 감상 활동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은 체험활동(민주로드)으로 대체한다.

3) 대강의 계획

순	시간	활동명	내용	준비물 및 자료	과목
1회	한 차시	‘권위’와 ‘권위없는 힘’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위 교재에 대해 설명하기 <‘무조건’초등학교의 허생 선생님>이야기 읽기 권위와 권위 없는 힘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자료 활동지 	도덕 or 사회
2회	아침 활동	‘권위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사람들>이야기 읽기 권위의 뿌리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자료 활동지 	
3회	한 블럭	권위로 인한 이익과 대가를 알아보고, 법과 규칙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피드 퀴즈하기 <옹고집 교장 선생님의 옹고집>이야기 읽기 권위의 결과를 이익과 대가로 구분하기 <‘진정한 권위가 살아 숨 쉬는’마을의 시작> 읽기 좋은 규칙과 법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지도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 누리에 필요한 규칙 생각해보기 [과제] 글쓰기-우리 누리에 필요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자료 활동지 스피드 퀴즈 툴 	사회 or 도덕
4회	한 블럭	우리 누리의 규칙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피드 퀴즈하기 웹캠 투 벤포스타 영상 보기 우리 누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하는 법 이야기 나누기 우리 누리의 법 정하기 제정 법률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물 활동지 	사회 or 도덕
5회	아침 활동	권위를 맡을 사람을 잘 뽑는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고집 교장 선생님이 변했어요!>이야기 읽기 알쏭달쏭 물음표 활동지 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자료 활동지 	



순	시간	활동명	내용	준비물 및 자료	과목
6회	한 차시	권위를 맡을 사람을 뽑을 때 도움이 되는 지도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를 맡을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 권위가 따르는 직위에 알맞은 사람을 뽑을 때 도움이 되는 지도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 누리에 필요한 권위를 가진 직위 정하기 • 직위의 의무, 권리, 제한, 자격 정하기 • [과제-1] 글쓰기: 나는 우리 누리에 필요한 권위를 가진 직위에 맞을까? • [과제-2<선택>] 후보 포스터 만들기 	• 읽기 자료	국어
7회	한 블럭	우리 누리에 필요한 직위에 맡는 사람 선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가 따르는 직위에 알맞은 사람을 뽑는 연습하기 •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기 • 투표 및 개표하기 • [과제-1] 글쓰기: 선거를 하고 나서 • [과제-2<당선자만>] 다짐문 써오기 	• 활동지	국어
8회	한 차시	권위를 가진 직위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뀌, 바뀌!> 이야기 읽기 • 알쏭달쏭 물음표 활동지 하기 • 권위를 가진 직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자료 • 활동지 	국어
9회	한 블럭	성범죄자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는 전자 발찌 착용 중> 이야기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추가자료 1,2,3>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 •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자료 • <추가자료 1,2,3> • 활동지 	사회
10회	아침 활동	권위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오공, 드디어 '권위의 열쇠'를 받다!> 이야기 읽기 • 본 프로그램을 하고나서 소감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자료 • 활동지 	

2. 다양한 교과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사회참여 활동) 풀어내기

1) 목적

- 가) 우리나라 땅인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나) 일본과 일본인을 무조건 배격하는 자세를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독도 학습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2) 방침

- 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 위주(그림으로 표현하기, 영어로 표현하기, 노래와 악기로 표현하기, 율동으로 표현하기, 영상으로 표현하기)로 구성한다.
- 나) 사회, 미술, 음악, 영어, 창체(영화)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3) 대강의 학년 수업 계획

블럭	활동명	내용	준비물 및 자료	과목 (시수)
1	너 독도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일승천기에 대해 알아보기 • 독도 O,X 퀴즈 대회 • 독도에 대하여 조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PPT, OX판 • 컴퓨터실 활용, 활동지 	사회(2)
2	독도에 대해 알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관련 영상 보기 •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 • 하나주고 하나받기 활동으로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영상 (평화의 섬, 독도) • 독도 PPT • 활동지(하나주고, 정리) 	사회(2)
3	독도 표현하기 ① -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과 글자 디자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화지, 그리기 도구 	미술(2)
4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려요!!-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본 지진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기 • PRAY FOR JAPAN From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영상과 독도 플래쉬몹 보기 •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방법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사회(2)
5-6	독도 표현하기 ② -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영어 가사 의미 알아보고, 읽기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영어 노래 챗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영문 가사 	영어(4)
7-8	독도 표현하기 ③ - 음악과 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합주하기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부르기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플래쉬몹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악보 및 악기 • 노래 영문 가사 • 플래쉬몹 동영상 	음악(3) 담임(1)
9-10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려요!!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합주 녹음하기 • '독도는 우리 땅, 30년 버전' 영어 노래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기 • 녹음 장비 	음악(4)
11-12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려요!! -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덱 영상용 소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준비물 	미술(4)
13-15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려요!! -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영상물(립덱) 리허설 및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준비물 • 촬영장비 	영화(6)
16	독도 프로젝트 발표회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대상 독도 O,X 퀴즈 • 독도 프로젝트 발표 1 - 독도 영어 노래 • 독도 프로젝트 발표 2 - 작은 음악회 • 독도 프로젝트 발표 3 - 독도 스피드퀴즈 • 독도 프로젝트 발표 4 - 독도 전시회 및 립덱 영상 시사회 • 독도 프로젝트 설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준비물 • 촬영장비 	영화(6)
0	독도, 사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관련 립덱 영상 유튜브에 올리기 • 독도 관련 이미지 디자인 작품 천왕역에 게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덱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XN6gQ_3lwtQ • 메이킹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BaS9zVc1jdA 	



2) 활동 사진



<독도 이미지 만들기>



<독도 작품 전시회>



<촬영 전>



<촬영 중>

- 교실에서 어린이나라 운영하기(권위<Authority> 수업 프로젝트+학급 규칙 정하여 생활하기)
- 창체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풀어내기
- 다양한 관계맺기활동과 연계한 교실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08

교실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중등)

신기숙 (독산고등학교 교사)

1. 논쟁 수업의 준비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 수업을 준비하기까지

‘말이나 행동이 실없거나 도리에 벗어나는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미친년. 항상 궁금했다. 왜 a군은 b군에게 미친년이라 칭하는 걸까? 장난삼아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욕으로 사용되는데 미친놈보다는 세계 느껴진다. ‘넌 남자새끼도 아니야.’ ‘여자 같은 놈’, 하여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란 뜻은 아닐까? 미친년! 하긴 말에 성별을 따지는 것도 우스운 듯 하지만 듣는 여자, 갑자기 의문의 1패를 당하다! 동급으로 듣기 싫은 말은 ‘쓰레기’, ‘애자’, 이런저런 ‘충’들…….

**모두모두
안녕!**

“무슨 일이니?” “내 견대요. 뭐!” 싸우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벽치기 중이란다. 커플이 되면 상대가 아무대서나 아무 때나 벽치기하고 머리 쓸어내려주고 볼 잡아 늘려도 좋아하는 걸로 착각한다. 평소의 학급생활을 보면 남녀구별 없이 서로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연애만하면 영락없이 구닥다리 ‘남자’고 ‘여자’가 된다. 여친 또는 남친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꼭 물어 보세요. 벽치기하기 전에, 해도 되겠니? 좋다, 싫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지나치게 눈치 보며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우리 자신, 친구를 귀하게 대접하면 안 될까요?

강남역 사건, 성 소수자 모임의 수난, 미국의 흑인 테러, 일본의 혐한시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끊이지 않는 갑질 사건들. 모욕에 모욕에 모욕의 피라미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만들어 놓고야 안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요. 절벽에 서 있는 느낌, 숨 막혀! “꺼져줄래” 말고, 구별 짓고 차별하여 존재를 증명하는 인정투쟁 따위 말고, 혐오표현, 차별표현 말고 서로 편안하게 만나, 아껴 주며 “안녕!”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해볼까요. “안녕!” …… 같이 해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 친구야!”

하여, 모두모두 ‘안녕하기’ 위하여, 우리 법과 정치 수업시간에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되겠니? No, no, no, hate speech”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2. 수업 과정 설계

대단원(대영역)		V. 사회생활과 법	중·소영역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학년	2학년
차시	학습 주제	차시별 교수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및 활동	장소
1~2	죄형 법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형벌,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 이해하기 -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기 			- 개인활동지	교과 교실
3-4	법정과제 수행 - 혐오표현 대 표현의 자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개념 이해하기 -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공감하고,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리를 헌법 조문에서 찾아보기 - 혐오표현 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적어보기 - “헤이트 스피치는 □(이)다” 광고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탐구 수행자료집 - 영상 - 개인활동지 - 모둠편성 	교과 교실
5	법정과제 수행 - 혐오표현 대 표현의 자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에 대해 혐오를 들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탐구 수행자료집 - 모둠활동지 - 토론활동 	교과 교실



3. 본 차시 수업디자인

탐구 과제		혐오표현 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학습 목표		1. 사회적 소수자에게 혐오를 드러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까? 와 2.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 알맞은 법적 근거로 주장이 드러난 말하기(토론)를 할 수 있다.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수업 자료 및 유의사항
배움 열기	수업 열기	<input type="checkbox"/> 오늘의 수업 진행 안내 <input type="checkbox"/> 전시 활동 확인 - 헤이트 스피치 개념 확인 <input type="checkbox"/> 학습 목표 확인하기	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PT 수행 자료집 모둠 활동지 </div>
배움 활동	모둠 토론 하기	<input type="checkbox"/> 혐오발언 사례를 담은 대본을 읽고 모둠토론 <활동-1> - 1인 1대사를 맡아 지시문과 역할에 맞게 대본 리딩 연기하기 <활동-2> - 모둠별로 활동지의 핵심 질문에 대해 모둠 토론	10	◎토론에 직접 개인하지 않고 쟁점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절히 개입하되 활발한 토론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주력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토론순서 안내판 </div>
	전체 토론 하기	<input type="checkbox"/>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전체 공개 토론으로 진행 - 토론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준다. - 토론 형식(1:1 토론)을 알려준다. (주장-1분, 교차질의-2분 * 2판) <활동-1> - 사회적 소수자에게 혐오를 드러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을까? <활동-2> - 혐오발언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벌해야 하는가?	10 20	
배움 정리	정리 예고	<input type="checkbox"/> 수업 소감 나누기 - 혐오와 차별을 넘어 존중과 현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안 - 다음 차시 예고 및 마무리	5	



4. 본 차시 활동지

법정 탐구 과제 활동지 | (1)

모둠 토론 자료 1 - 혐오발언을 다룬 대본과 읽기자료를 읽고 모둠 활동을 해보자.

◎ 소수자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가?

결론	그렇다	아니다.
이유 대사 참고	*왜냐하면~	
우려지점 보완	*물론~	
정리	*그러므로~	



모둠 토론 자료 2 - 모둠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

결론		
이유		
법적 근거		
우려 지점 보완	(예상 반론1)	(예상 반론2)
	(반론1에 대한 입장)	(반론2에 대한 입장)
정리		



#0. TV를 보고 있는 수정

① 수정: (수정이 누워서 엉덩이를 긁으며 TV 채널을 뒤척이고 있다.) 하, 뭐 볼 거 없나?

- 쇼 미 더 머니 화면이 나오고, 니코*가 등장하며 화면 속으로 점점 클로즈업된다.

* 니코는 만 19살의 유명 그룹의 멤버이자 래퍼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유튜브 조회 수가 수억 뷰를 넘는 한류스타이다.

#1-1. 쇼 미 더 머니, 참가자1과 니코의 배틀

② 참가자1: 어 썩 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랩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나의 랩

내일 학교 미술시간 준비물은 wrap

심심할 때 하면 재미있는 게임 앱

이번 쇼 미 우승 내꺼 내가 바로 썩

니코: (올리브출신 참가자1에게 한 대 칠 듯이 다가가 위협적인 얼굴로 노려본다.)

③ 참가자1: 이것 봐, 나오지 니 인성,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갑질하고 욕하는 니 인성

하지만 인성이 썩어도 얼굴되면 다 용서되는 니들 팬덤? 하 웃기네. yo yo

④ 니코: (흥분) 그게 지금 니 랩? 랩이 뭔지 보여주지 yo.

인성이 썩어도 사람패도 이 잘난 얼굴로 날 좋아해주는 팬이 있지 yo 그런데 넌?

인성이 좋아도, 니 얼굴이, 인상이 아주 나빠! 이런 금목걸이?

난 마음만 먹으면 100개는 할 수 있지 너나 가져

이 불쌍한 거지 올리브인 새끼야 니네 나라로 꺼져

- 니코가 그대로 퇴장하고 심사위원들 병 찌 표정이다.

- 다른 참가자들이 핸드폰을 들어 이 광경을 찍고 있다.

#1-2. 인터뷰 논란

- 오디션장 밖,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다.

⑤ 김기자: (다급한 목소리로 니코를 부른다.) 니코씨, 화가 많이 나 보여요.

⑥ 니코: (심기불편) 당신도 올리브인 아니죠? 올리브사람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⑦ 김기자: (당황하며) 왜 그렇게 올리브사람들에 대해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건가요?



- ⑧ 니코: (어이없다는 듯) 싫는데 이유가 있나요? 내 참 퀄리티 떨어져서! 더럽고 같이 있으면 병이 옮을 것 같아요. 내가 올리브인이었다면 창피해서 이런 오디션 참가하지도 않아요. 그냥 싫어요.
- ⑨ 니코: (결심한 듯) 개네들, 얼굴도 까만 게 음침해 보여! 게으르고 느리고 멍청해 보여! 약한 척 특별 대우나 바라고 지저분하고. 다 불법 아니야? 주제에 나랑 경쟁하겠다고! 난 개네랑 섞이는 게 싫어. 한국사회를 어지럽히는 바퀴벌레 같은 놈들!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난 애네들 추방 운동 벌일 겁니다. (니코가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하고 전용 밴에 올라탄다.)
- ⑩ 최기자: (목소리 더빙만) 세상에, 니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 며칠 뒤, 국내의 외국인시설에서 불이 나 올리브인 여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 ⑪ 니코: (페이스북에 글 쓰는 장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어야 할 종족들이었다. 오히려 세금을 아끼게 되어 잘 되었다. 올리브인들은 더럽고 게으른 종족들,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나머지 올리브 종족들은 유태인처럼 가스실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 이후 이런 식의 비하 및 혐오발언 그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콘서트 중에도 하였고 자신의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논란이 된다.

#1-3. 인터뷰 동영상과 SNS를 본 올리브나라 사람들의 반응

- ⑫ 올리브 시민 1: (친구에게 보고 있던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한다.) 세상에, 너 이거 봤어?
- ⑬ 올리브 시민 2: (감탄하듯이) 뭐야? 니코잖아! 잘 생겼다~.
- ⑭ 올리브 시민 2: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곧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으로 클로즈 업) 이거 실화임? 미친 거 아냐?

#2-1. 올리브에 휴가차 방문한 니코

- 공항. 올리브나라 시민들이 시위 중이다. 한류스타답게 선글라스와 비싼 옷을 걸치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니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얼굴을 찌푸린다.
- ⑫⑬ 올리브 시민1,2: (니코 입국반대! 사과하라! 등의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니코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니코의 입국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 ⑭ 니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나 같은 대스타가 죄간한 나라에 와줬으면 감사히 반기지는 못할망정 뭐, 입국금지? 헛소리 말고 빨리 들여보내줘!
(어이없어하며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 데 속수무책이다.) 뭐, 뭐야 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고 막고 서 있는 거야? 정신 못 차려! 어디 올리브 주제에!
- (다함께) 올리브 시민들: (들어오려는 니코를 막는다.) 저리가! No, no, no! Hate speech!
- ⑮ 올리브 시민 4: (울분을 담아) 니코! 당신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사는지 아세요? 당신 같이 영향력 있는 스타가 우리 동포들 보고 바퀴벌레라느니, 꺼지라느니, 함께 힘 모아 내쫓자고 선동하는 바람에 동포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어디 가서 올리브 출신이라는 말도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해코지 당할까봐 또 말도 못하고, 올리브인인 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말 못하고 차별당하며 살도록 당신의 그 더러운 말까지 허용하는 게 표현의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욕설을 멈추세요. 그리고 당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세요!

(다함께) 올리브 시민들: 니코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⑩ 니코: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말한다.) 빌어먹을!

#2-2. 올리브방송 크리스탈 기자가 한국에 와서 가수 니코와 인터뷰하는 장면

⑪ 크리스탈 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란의 중심 니코를 만나 보겠습니다. 니코씨, 안녕하세요?

니코: (거만하게 어깨만 건들건들)

⑫ 크리스탈 기자: (당황하여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니코씨, 최근 우리나라에 휴가차 왔다가 공항에서 발길을 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니코씨 험한 표현들이 문제인데요,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⑬ 니코: 스텍!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소신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다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⑭ 크리스탈 기자: (받아 적으며) 표현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했다.

⑮ 니코: (눈을 부라리며) 당연하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냐고요. 내가 틀렸나요? 솔직히 올리브 여자들? 아주 머리 텅텅 비고 남자만 좋아하는 골빈녀들이죠.

⑯ 니코: 입국금지 당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올리브 사람들이에요. 올리브인들은 이랬다저랬다 어쩐지 믿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입국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⑰ 크리스탈 기자 : 네. (씩 웃으며) 특종이네요.

-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가 차별금지법이 있는 올리브방송에서 편집 없이 10분간 적나라하게 방송된다.

#3. 올리브 정부의 기자회견

- 올리브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여 인사도 없이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⑳ 올리브 정부 대변인: (딱딱하게 각진 목소리로) 지난 20일, 한국 가수 니코의 인터뷰 동영상은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방송의 크리스탈 기자는 니코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㉑ 올리브 정부 대변인: (물 한 잔을 마시며) 이것은 올리브 국민이면서도 니코의 만행을 그대로 방송하여 혐오표현을 널리 유포시키고 방조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개



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의도를 가지고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또는 신념 등을 이유로 협박, 모욕, 비하하는 표현을 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㉕㉖ 기자들: (수군수군 찰칵찰칵) 뭐야? 너무 한 거 아니야!

㉗ 올리브 정부 대변인: 그러므로 크리스탈 기자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함께) 기자들: (손을 들며) 질문 있습니다!

㉘ 올리브 정부 대변인: 예. 질문 하십시오.

㉙ 기자a: 크리스탈 기자는 자신의 발언이 아닌 니코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을 뿐인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㉚ 기자b: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니코의 발언 내용과 그 속내를 정확히 알고 싶어해요! 크리스탈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실 보도한 것뿐인데 이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요! 소도 웃어요. (답도 웃습니다.)

㉛ 기자c: 아니, 니코는 핑계인거죠.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서 국가가 나서서 언론을 관리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나 매한가지 발상이에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㉜ 올리브 정부 대변인: ... 그 그건.... (입을 열자 카메라 포커스 아웃)

㉝ 목소리 더빙: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코의 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 할까요? 크리스탈 기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원칙)

2.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12월 16일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1990년 4월 10일 한국 가입)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③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①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②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읽기 자료 -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장 2016청소년인권경진대회 읽기 자료 중에서

(가)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혐오자와 피혐오자를 모두 파괴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인간성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당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당신이 누구인가는 무시한다. 인종주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의 상표만 보는 것이다.

인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평등이다. 표현의 자유도 인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이미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었다면 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다른 폭력을 조장하고 교묘하게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또는 외국인 혐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서와 행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자 근본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고, 단지 이 표현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받으며, 부적절한 표현이나 사상은 그 시장에서 도태되는 방법으로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혐오 표현은 파괴적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언론은 수사를 받거나 고소되거나 억압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09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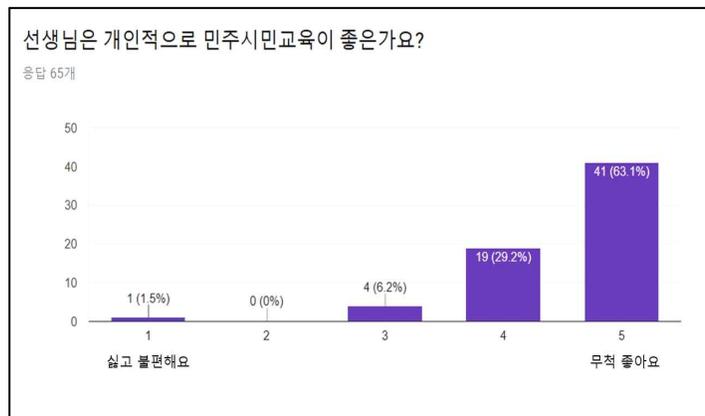
이은진 (발산초등학교 교사)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질문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날것’에 가까운 생각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은 설문조사 및 주변 지인들과의 서면 인터뷰 및 대화를 통해 알게된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고,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7문항의 질문을 하였고, 총 응답인원은 65명이었습니다(66개의 응답 중, 1개 응답은 중복응답이었기에 삭제함). 1~3번 문항까지는 5단계 척도에 따른 교사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4~5번 문항은 다중선택, 6~7번 문항은 경험과 생각을 기술하는 자유 응답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설문 설계나 응답 과정에서의 통제가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사들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것을 참고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좋아할까? (문항1)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크게 놀라운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이상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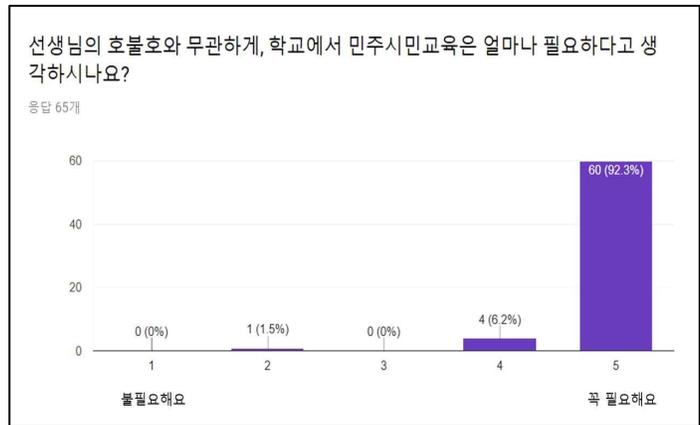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소수응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불편하고 싫다는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문에서는 그 까닭을 묻지 않았기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해당 응답자의 이후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미루어볼 때, ‘민주 시민교육’이 하나의 업무로 학교에 들어옴에 따라 생겨나는 불편함일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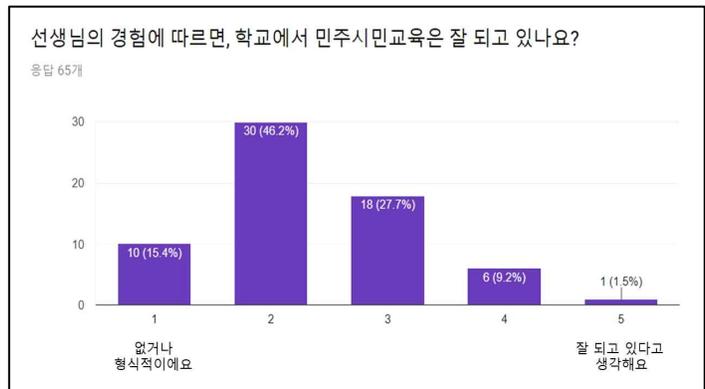
2.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문항2)

교사들은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개인적인 호감도가 ‘4’ 수준이었던 교사들이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 수준을 선택하였습니다. 호감도에 비해 필요성을 훨씬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교사들이 경험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문항3, 문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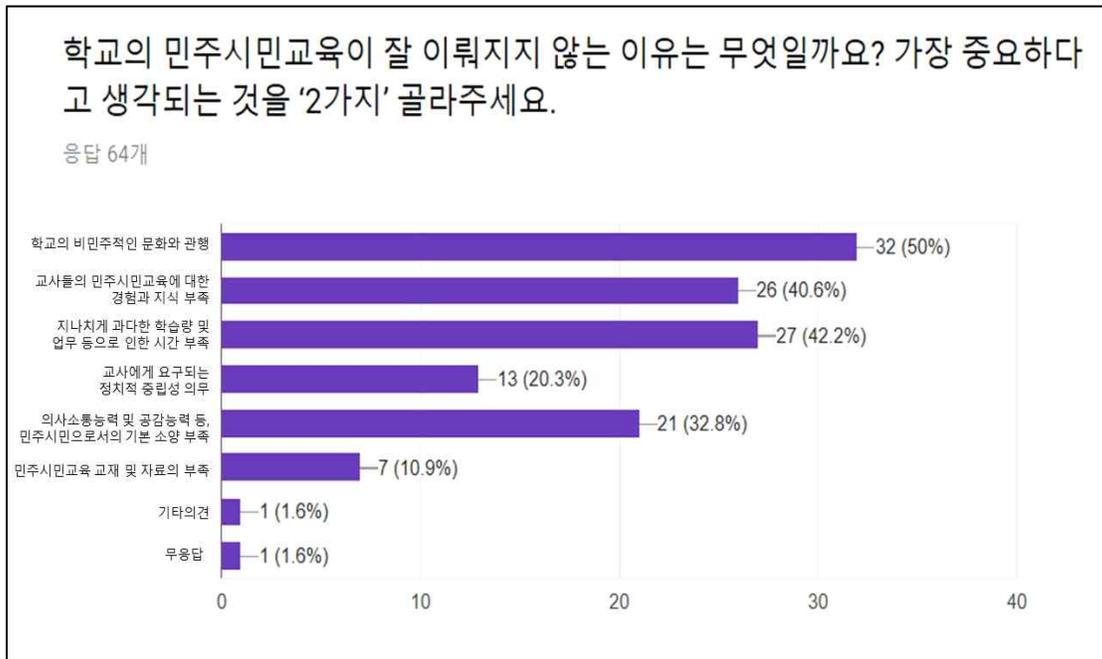
상당수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번 문항에서 자유 응답식으로 대답한 것을 참조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틀과 주제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학급회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교직원회의와 학생회 등이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나쁜 사례’로 언급됩니다. 또한, 학교장의 주력사업을 위해 학생회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고 교육과정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자치활동을 **한류에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상의 계획으로만** 존재함. 학년말에 **실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할 때 참...”
(설문 문항 6번 응답 중에서 발췌함)

4. 민주시민교육은 왜 잘 안될까? (문항4, 문항6)



교사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 ‘시간 부족’, ‘교사들의 경험과 지식 부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부족’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문항 6번의 자유응답 및 개인적 인터뷰에서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해설사를 초청하여 방송 훈화를 부탁했는데, 관리자가 훈화원고를 검토라는 이름으로 검열했던 기억”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믿지 못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남기게 하는 등, 쓸데없는 잡무가 줄어야...”

“교장이 모든 합의를 누르고 본인 뜻대로 하는 교무회의”



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3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교사의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설문 및 인터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학급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교실살이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교사가 교장/감 등 관리자와 민주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였습니다. 즉, 교사를 둘러싼 학교의 구조와 환경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실제적인 민주시민교육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소수 의견으로 ‘교사의 기계적 중립’을 꼽은 응답자도 있습니다. 이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취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는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해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는 선거법 등에 의해 선거 기간동안 교실 속 수업 상황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조차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사가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정치교육 학자들은 교사가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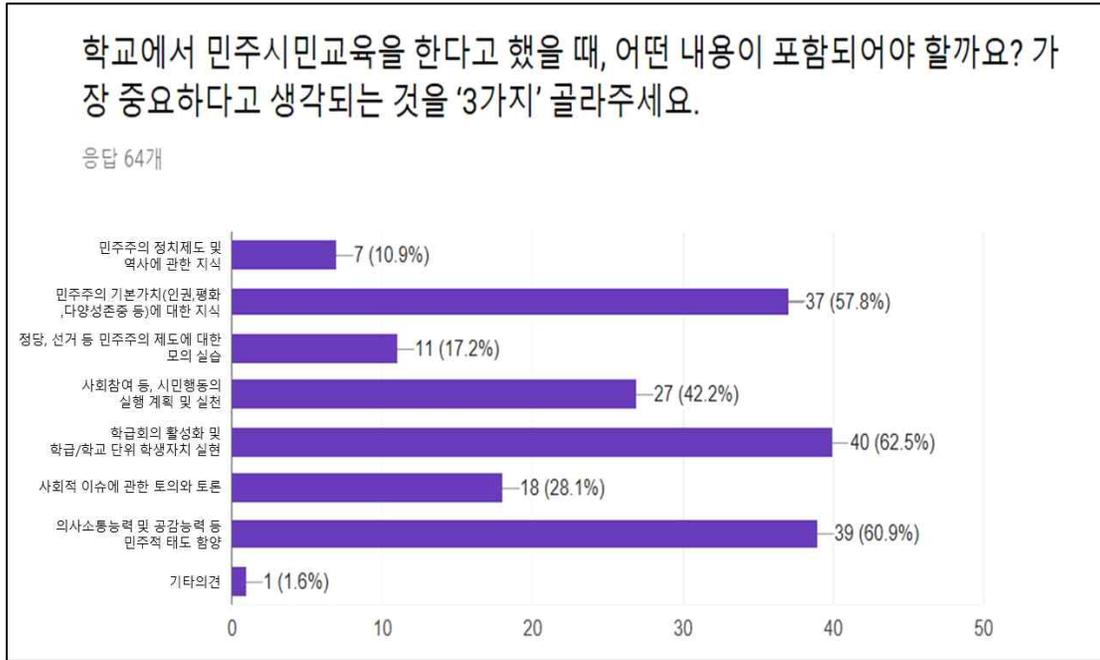
“나는 중립적인 교사를 모범적인 역할로 삼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견해 상실과 자기 배제 및 불문명한 입장 표명이라는 악덕을 조장한다.”

(프랑크 논넨마허의 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p.104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반론은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백지 상태의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대로 그대로 물드는 백지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면,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온전히 물들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문항5, 문항6)



교사들이 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학급회의 및 학생자치’,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 등 민주적 태도 함양’,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지식’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을 달고 손쉽게 이뤄지던 민주주의 정치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나 모의선거나 투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회의와 토의를 통해 학급의 일을 결정하고 실천한 것과, 교사로서의 기다림을 통해서 ‘학생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깨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학급회의를 통해 교실 내 문제를 해결”

“국어 시간에 토의를 해서 체육 시간에 결정된 미션을 수행한 경험”

“학급다모임을 통한 의결 및 실행” (문항6 응답 중에서 발췌)

교사들이 이야기한 좋았던 사례는 주로, 학생회나 학교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6번 문항에 대답한 38개의 응답 중, 학급회의에 관한 내용은 20개였습니다. 즉, 교사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요소는 거창한 구조나 제도,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 이전에 학생들의 일상 삶 속에서의 참여와 결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발달이나 경험의 폭이 사회 구조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초등교사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영역이 교실 속에 한정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의토론이나 사회참여 등 시민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요소로 여겨지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초등교사 사이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초등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후순위로 미루어 두거나, 덜 다루어도 되는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 민주적인 학교란 어떤 곳일까? (문항7)

<문항4>를 통해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일까요?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항7>의 자유응답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보장’,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및 실행’,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 ‘자발성’ 등을 민주적인 학교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징의 주어로 교사와 학생이 골고루 등장합니다. 즉, 학교의 권력을 교장이 독점하지 않고, 교실의 권력을 교사가 독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학교 민주주의는 단순히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그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정하고 학급의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이 민주주의의 장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에는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 즉 인권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교육 장면이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상상해보자!

만약 기존의 모든 경험과 방식, 내용을 벗어나, 더 자유롭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민주시민교육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다음 몇몇 선생님의 생각을 보고 선생님의 생각도 활짝 펼쳐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회의 시간에 교장과 교감의 발언을 금지하고 오로지 듣기만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실에서도 학급회의 시간에 선생님의 발언을 금지한다면, 아이들의 발언이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KMJ 선생님)

“학급회장과 부회장의 공약을 교실에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공약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JHH 선생님)

“전교어린이회장 선거 복습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학기말에 가지는 거죠.” (KJY 선생님)

<부록1: 구글 설문지>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미래' 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강의를 해야합니다. 강의를 위해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생각이 필요해요. 편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좋은가요?

1 2 3 4 5

싫고 불편해요. ○○○○○ 무척 좋아요.

선생님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2 3 4 5

불필요해요. ○○○○○ 꼭 필요해요.

선생님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잘 되고 있나요?

1 2 3 4 5

없거나 형식적이에요. ○○○○○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 골라주세요.

-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
-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
- 지나치게 과다한 학습량 및 업무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
-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
-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부족
- 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의 부족
- 기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골라주세요.

- 민주주의 정치제도(선거, 정당, 3권분립 등) 및 역사에 관한 지식
-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권, 평화, 다양성 존중 등)에 대한 지식
- 정당, 선거 등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의 실습
- 사회참여 등, 시민행동의 실행 계획 및 실천
- 학급회의 활성화 및 학급/학교단위 학생자치 실현
-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의와 토론
-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 등, 민주적 태도 함양
- 기타:

선생님의 경험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좋았던 사례 혹은 나빴던 사례를 1가지 정도 설명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학생들이 마음껏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학교)

본내기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